

의정활동보고서

제200회 정례회(2005. 7. 1 ~ 7.11)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용대 행정부지사님과

류상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 개최되는 제200회 정례회가 열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뭉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도정과 교육행정을
이끌어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방 초소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으로 희생된 장병들의
유가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하여 수해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보호와, 전염병 예방, 그리고 행락지 안전대책 등, 도민들이 하절기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는 특별히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통하여 도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 되었는지에 대해 알뜰히 검증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잣대를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협력하여 도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심어 주는 뜻 깊은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절기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李 哲 雨

차 례

I . 개 황	
II . 의사일정	
1. 소 집	
2. 회 기	
3. 활 동	
가. 본회의	
나. 상임위원회	
III . 의안 처리	
1. 본회의	
2. 상임위원회	
IV . 민원 처리	
1. 청 원	
2. 진 정	

가. 접 수

나. 처 리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2. 조례 공포사항

VI. 기타사항

VII. 5분 자유발언

부 록

- 조례안
 - 1.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상북도 우수 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5. 경상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결산안
 - 1. 200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 2. 200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동의안
 - 1. 2007년도 개교예정학교 신설비 민간투자유치계획안
- 기타안
 - 1. 2004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보고
 - 2.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상황 보고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00회 정례회는 2005년 7월 1일부터 본회의를 개최하여 7월 11일까지 11일간의 회기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 11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7월 1일(금)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장대진·우성호·장미향·김기대·권종연의원)을 청취한 후 이어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경상북도의회 제200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04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일반 및 특별 회계 결산 검사 결과보고 등을 의결하고 휴회하였다.

휴회 기간(7월 2일 ~ 7월 10일) 9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결산안, 동의안 등을 심사하였다.

7월 11일(월)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권종연·한혜련의원)을 청취한 후, 200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 결산안 2건, 경상북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07년도 개교예정 학교 신설비 민간투자유치 계획안 등 2건을 의결한 후 경상북도의회 제200회 정례회를 폐회하였다.

Ⅱ. 의사일정

1. 소집

가. 집회구분 : 정례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다. 집회 공고일 : 2005년 6월 22일(수)

라. 집회일시 : 2005년 7월 1일(금)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05년 7월 1일 ~ 7월 11일 (11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2회 (누계 79회)

○ 상임위 회의 : 11회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5. 7. 1(금) 11:00 (제1차)	1. 제20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 2004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보고 3.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상황 보고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보고	원안가결

개회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5. 7. 1(금) 11:00(제1차)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2005. 7.11(월) 11:00(제2차)	1. 200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0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우수 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7년도 개교예정학교 신설비 민간투자유치 계획안 9.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나.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7. 5(화) 15:00(제1차)	○ 제20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 · 의회사무처 소관	원안가결

〈기획과학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7. 4(월) 11:00(제1차)	○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 기획관리실·과학정보산업국·공보관 실·감사관실·공무원교육원 소관	원안가결

〈행정사회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7. 4(월) 11:00(제1차)	○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심사 · 자치행정국(자연환경연수원 포함), 보건복지여성국·경도대학 소관	"

〈교육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7. 4(월) 11:00(제1차)	○ 2004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 환경산림수산물국·산림환경연구소·산림 자원종합개발사업소·팔공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수산자원종합개발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원안가결
2005. 7. 4(월) 11:00(제2차)	○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 2007년도 개교예정학교 신설비 민간투자 유치 계획안 ○ 200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 ·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원안가결 " "

〈농정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7. 5(화) 11:00(제1차)	○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 농정국·농업기술원 소관 ○ 경상북도 우수 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경제문화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7. 5(화) 11:00(제1차)	○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 경제통상실·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원안가결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7. 5.(화) 11:00(제1차)	○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 건설도시재난국 · 소방본부 소관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7. 1(금) 14:00(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 김순견의원 (교육환경위) · 간 사 : 강영서의원 (농정위)
2005. 7. 6(수) 10:30(제2차)	○ 200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 자치행정국 · 경도대학 · 보건복지여성국 · 기획관리실 · 공보관실 · 감사관실 · 공무원 교육원 · 건설도시재난국 · 소방본부 · 의회 사무처 · 보건환경연구원 · 농업기술원 소관	원안가결
2005. 7. 7(목) 10:30(제3차)	○ 200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 · 교육청 소관 ○ 200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 환경산림수산국 · 경제통상실 · 문화체육 관광국 · 과학정보산업국 소관	원안가결 원안가결

Ⅲ. 의안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 의	심의 · 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9 (327)	9 (323)	9 (284)	(37)	(2)	(2)	(2)	
조 례 안	소 계	5 (158)	5 (156)	5 (136)	(19)	(1)		(2)	
	의회 제안	(16)	(16)	(6)	(9)	(1)			
	도지사 제출	4 (115)	4 (113)	4 (105)	(8)			(2)	
	교육감 제출	1 (27)	1 (27)	1 (25)	(2)				
예산 · 결산		2 (30)	2 (29)	2 (15)	(14)		(1)		
동의 · 승인		1 (81)	1 (81)	1 (80)	(1)				
건의 의 안		(12)	(12)	(11)	(1)				
결 의 안		(12)	(12)	(11)	(1)				
기 타 안		1 (34)	1 (33)	1 (31)	(1)	(1)	(1)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부결 안건 현황 : 2건〉

- ①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박승학의원의외 14인 발의, 2003. 9. 2, 본회의)
- ② 경북·대구통합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정기의원의외 16인 발의, 2004. 9. 1, 의회운영위원회)

〈철회 안건 현황 : 2건〉

- ①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철회안
(김정기의원의외 32인 발의, 2004. 7. 2, 본회의)
- ② 200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
(박영화의원의외 20인 발의, 2005. 6. 9, 본회의)

〈계류 중인 안건 현황 : 5건〉

- ① 경상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조례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2002. 10. 15, 행정사회위원회)
- ②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2003. 9. 8, 기획위원회)
- ③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2004. 7. 1, 미상정)
- ④ 경상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2004. 7. 1, 미상정)
- ⑤ 경상북도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재의요구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2005. 7. 4, 미회부)

2. 상임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철회	계류
		가 결							부결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의	기타			
계	9 (329)	9 (321)	5 (156)	2 (29)	1 (81)	(12)	(12)	1 (31)	(2)	(2)	(4)
의 회 운 영	(11)	(10)	(6)				(2)	(2)	(1)		
기 획 과 학	(25)	(24)	(14)		(6)	(2)	(1)	(1)			(1)
행 정 사 회	3 (90)	3 (89)	3 (62)		(24)	(1)	(2)				(1)
교 육 환 경	2 (46)	2 (46)	1 (33)		1 (11)	(1)		(1)			
농 정	1 (20)	1 (20)	1 (7)		(11)	(2)					
경 제 문 화	(45)	(45)	(19)		(22)	(2)	(2)				
건 설 소 방	(22)	(22)	(12)		(7)	(2)		(1)			
특 별	3 (30)	3 (30)		2 (29)				1 (1)			
본회의	(40)	(35)	(3)			(2)	(5)	(25)	(1)	(2)	(2)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IV. 민원처리

1. 청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7대 의회 실적

2. 진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어업	기 타
계	1 (120)	1 (14)	(13)	(12)	(22)	(9)	(9)	(14)	(12)	(15)
의 회 운 영										
기 획 과 학	(6)		(1)		(1)		(2)			(2)
행 정 사 회	1 (16)	1 (9)	(3)	(1)	(1)					(2)
교 육 환 경	(26)			(1)		(9)		(13)	(2)	(1)
농 정	(9)			(1)	(1)				(7)	
경 제 문 화	(27)	(2)	(9)	(4)			(7)			(5)
건 설 소 방	(33)	(3)		(5)	(19)			(1)	(3)	(2)
특 별 위원회	(3)									(3)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나. 처 리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1 (119)	1 (119)				(1)
의회운영						
기획과학	(6)	(6)				
행정사회	1 (16)	1 (16)				
교육환경	(26)	(26)				
농 정	(9)	(9)				
경제문화	(26)	(26)				(1)
건설소방	(33)	(33)				
특별위원회	(3)	(3)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지사 (2005. 7. 1)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5. 7. 4)
경상북도지사 (2005. 7. 1)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5. 7. 4)
경상북도지사 (2005. 6. 23)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5. 6. 27)
경상북도지사 (2005. 6. 27)	경상북도 우수 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 정 (2005. 6. 27)
경상북도지사 (2005. 6. 27)	200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각 상임위 (2005. 6. 27)
경상북도교육감 (2005. 6. 23)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05. 6. 27)
경상북도교육감 (2005. 6. 23)	2007년도 개교예정학교 신설비 민간투자 유치계획안	교육환경 (2005. 6. 27)
경상북도교육감 (2005. 6. 23)	200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교육환경 (2005. 6. 27)
경상북도지사 (2005. 7. 4)	경상북도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재의 요구안	

2. 조례 공포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5. 6. 13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	2005. 6. 27
2005. 6. 13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2005. 7. 4
2005. 6. 13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	2005. 7. 4
2005. 6. 13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2005. 7. 4
2005. 6. 13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독도의 날 조례	2005. 7. 4
2005. 6. 13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	2005. 6. 23
2005. 6. 13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2005. 6. 23
2005. 6. 13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감 직속기관 및 지역 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2005. 6. 23
2005. 6. 13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	2005. 6. 23

VI. 기타사항

○ 의원 해외 연수

- 일 시 : 2005. 6. 12(일) ~ 6. 26(일)
- 장 소 : 북유럽 7개국
- 참 석 : 최원병 의원 외 12명

○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 일 시 : 2005. 6. 17(금) 14:00
- 장 소 : 경기도의회
- 참 석 : 이철우 의장

○ 제34회 전국소년체전 해단식

- 일 시 : 2005. 6. 20(월) 15:00
- 장 소 : 경북체육고 체육관
- 참 석 : 정보호 교육환경위원장

○ 충남의회 호남고속철 관련 특위 위원 접견

- 일 시 : 2005. 6. 21(화) 15: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이철우 의장

○ 6·25전쟁 55주년 기념행사

- 일 시 : 2005. 6. 22(수) 11:00
- 장 소 : 칠곡군 교육문화 복지회관
- 참 석 : 이철우 의장(격려사), 나종택 행정사회위원장, 권준택 의원
김주연 의원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북선수단 해단식

- 일 시 : 2005. 6. 24(금) 15:00
- 장 소 : 도청강당
- 참 석 : 이철우 의장(축사), 나종택 행정사회위원장

○ 천연물질개발 전략수립 심포지움

- 일 시 : 2005. 6. 24(금) 10:00
- 장 소 : 경상북도 농업인회관
- 참 석 : 이용석 농정위원장(축사)

○ 민선도정 10년 평가와 향후과제 토론회

- 일 시 : 2005. 6. 28(화) 17:00
- 장 소 : 경주 교육문화회관
- 참 석 : 이철우 의장, 손규삼 부의장, 이 달 의원

○ 대구경북 지역발전협의회

- 일 시 : 2005. 6. 29(수) 07:30
- 장 소 : 그랜드호텔
- 참 석 : 이철우 의장

○ 자연환경연수원 종합교육관 준공식

- 일 시 : 2005. 6. 29(수) 11:00
- 장 소 : 자연환경연수원
- 참 석 : 이철우 의장, 나종택 행정사회위원장, 김석호·이상태 의원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 일 시 : 2005. 6. 30(목) 16:00
- 장 소 : 설악켄싱턴스타호텔
- 참 석 : 안순덕 의회운영위원장

VII. 5분 자유발언

□ 2005년 7월 1일(금) 제1차 본회의

◎ 장대진의원 ◎

안동출신 장대진의원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중 176개 기관의 지방이전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수도권과 지방과의 경제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므로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으로는 정부는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 지방과 지방과의 격차를 줄이면서 최소한의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한 형평성의 원칙과 지방이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각 산업별로 특화 기능군을 지방에 분산 배치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이번 공공기관 이전배치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지만 이러한 원칙에 의해 경상북도에는 1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되었습니다. 이는 경상북도 입장에서 불만족스러운 결과일수도 있으나 국가 전체적으로는 각 지방이 최소한의 자립형 지방화를 추진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상북도의 전략산업 중의 하나인 농업 및 생물산업 기능군 4개, 도로 교통 기능군 3개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은 이의근 지사께서 평소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분권, 분산, 혁신 운동의 취지에도 맞거니와 다소 미흡하지만 경북의 지역혁신5개년계획과도 상당부분 적합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상북도의 대응방안은 그 동안 분권과 혁신운동에 대한 발 빠른 행보는 없고, 공공기관의 입지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렇

지 않은 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어렵게 성사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지방 내 배치에 대해 경상북도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경상북도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해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거나 혹은 지나친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경북도민의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자의적인 입지선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경상북도의 착각에 기인하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원칙, 혹은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 협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데 기인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는 9월까지 이전대상공공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이전 및 배치에 대해 경상북도와 이전 대상기관이 정부안을 인정을 하되, 서로 협의하여 원만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연말까지 이전지를 최종 확정하여 추후 단계별 행정절차와 이전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경상북도는 혼자만의 목소리, 혹은 정리되지 않은 의견을 직접·간접적으로 피력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시·군 간 갈등구조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효율성,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현재까지는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공공기관의 입지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내 각 시·군의 유치전이 현재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차원에서의 형평성과 효율성이라는 원칙이 지방 내에서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상충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의 경상북도의 조정기능이 시급히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정부공공기관이전정책의 기본원칙인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보다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경상북도와 이전대상 공공기관과의 협약은 물론 경상북도 23개 시·군간 협약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그나마 갈등구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협약의 내용은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 혹은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와의 협약내용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시·군 간의 갈등구조를 조기에 수습하는 방법임과 동시에 국가차원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경상북도의 산하 공공기관의 시·군 이전을 제안한 구미경실련의 질의에 신속하게 응답한 우리 경상북도의 대응에 대해서는 각각 격려와 환영의 말씀도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시·군 간의 부작위적인 분배가 아닌 국가전략산업의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경상북도의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의 육성을 위한 포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경북도의 발전을 위하고 금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조속히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앞서 본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혁신도시 입지와 더불어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시·군간 입지선정에 대한 원칙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성호의원 ◎

영주시 출신 우성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민선 자치가 부활된 지 꼭 10주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이런 뜻 깊은 날에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민선자치 10년은 일천한 연륜 속에서도 수많은 시행착오와 함께 주목할 만한 적지 않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그런 현행 자치제는 기본적으로는 1950년도의 골격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 초반의 변화된 지방행정환경과는 걸맞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의 기본 틀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새로 짜야 할 때입니다.

행주계층구조와 행정구역개편 중앙, 광역, 기초간 기능 재배분, 특별지방행정기관 폐지,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제 실시 등 지방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중앙집권적 잔재를 씻어 내고 지방분권적 제도를 확충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효율적 민선자치가 하루속히 뿌리 내리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차분히 그리고 집중적으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행정 도시건설에 이어서 지난 6월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건설 또한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노무현정부의 이러한 분산정책들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보다는 오히려 전국의 부동산투기장화를 부추길 것을 우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산정책은 사회주의적, 분배주의적 냄새가 짙은 것으로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자유주의 철학과는 배치되는 것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분산보다 분권이 우선적이며 보다 본직적인 것임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지방분권적 기본틀을 갖추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공공기관 지방이전방안 발표를 여태까지의 시도간 갈등양상을 급기야 각 도내 시군간 첨예한 갈등양상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우리 도내 각 시군은 앞 다투어 한국도로공사 또는 한국전력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이전투구의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의 틀, 삶의 틀을 제대로 갖추는데 서로 머리를 맞대어야 할 우리가 눈앞의 떡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다면 이는 지나친 표현입니까?

자칫하면 도정과 함께 시군정을 모두 마비시킬지도 모를 혼돈상이 우려될 지경입니다.

어쨌든 13개 공공기관과 함께 7개 도산하기관도 이전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도합 20기관의 합리적 효율적 배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급급 현안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그리고 도의회의 조정력과 각 시군간 상호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지역내 정치력이 통합 지향적으로 발휘될 것이 요구됩니다.

공공기관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기본취지상 효율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한 소외지역을 우선 배려해야 할 것이며 조만간 구성될 공공기관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선임 또한 객관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외지역 우선 배려차원에서 도내 상위 5대 거점도시는 공공기관 이전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이전이 수도권과 대전 충남을 제외한 것과 같은 이치로서 이들 5대 도시는 여태까지 숏한 국책사업, 도책사업에서 우선적 시혜를 받아왔고 또한 상당한 자생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도는 금번에 언급된 7개 도산하 기관 이전 이외에도 불합리하게 배치된 지방공사의료원의 재배치 및 각직에 산재해 있는 농업시험장의 통·폐합 등을 포함한 좀 더 심도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공공기관이전과 혁신도시건설을 연계하라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시범배분이 산술적 형평에 치우칠 경우 자칫 해당지역 발전과 연계성 및 공공기관간의 연관성 측면에서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장미향의원 ◎

상주시 출신 장미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서 도정전반에 걸쳐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라 포괄적인 발언을 해야 마땅하지만 저의 출신인 상주시의 입장을 밝혀야만 한다는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공기관이전에 관한 발언이 있었지만 지난 6월24일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이 발표되어 검토결과 전체 176개 이전대상 기관 중 경상북도에서는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13개 공공기관이 배정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지방으로의 공공기관이전 발표계획을 발표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로가 유치타당성을 주장하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상주시도 한국도로공사와 농업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유치 논리로 개발하고 후보지를 검토하여 유치대상기관을 방문, 유치제안서와 홍보물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백방으로 뛰어 다녔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범시민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상주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서명을 받아 중앙부처와 경상북도에 전달하였고 상주시의회에서도 유치건의문을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한국도로공사와 혁신도시건설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정부정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우리 상주시는 국토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주~여주간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에 이어 상주~청원간 고속도로가 2007년 완공을 앞두고 있고 상주~영덕간 고속도로가 곧 착공될 예정에 있는 등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서 공공기관의 업무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또한 수도권과 충청권 행정중심도시와 접근성이 뛰어나 국토의 중심 기능을 살리고 낙후된 경북북부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가 매우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경제신문부설 (주)백상경제연구소의 학술용역결과 당초 한국도로공사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강원도 원주를 비롯한 전국 여덟 개 자치단체 상주, 원주, 충주, 무주, 김천, 구미, 김해, 밀양 중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인 지역의 낙후성과 업무연관성 주요도시와의 접근성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우리 상주시가 단연 1위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형농업혁신도시 유치를 희망하는 전국 아홉 개 지방자치단체 상주, 밀양, 진주, 익산, 정읍, 김제, 나주, 보은, 영동 중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관성, 지역의 혁신환경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상주시가 단연 1위로 논리적 타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리와 타당성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상주시 공공기관범시민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고의 노력을 해오면서 전시민은 최대의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농업혁신관련 공공기관의 경상북도이전확정은 참여정부가 상주시의 유치당위성을 검토하고 공감한 결과로서 시민 모두는 크게 환영하고 있는 바이며, 상주시의 유치활동이 결정적 역할을 한 공공기관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주시민과 출향인사를 포함한 상주시의 입장입니다.

당초 정부에서 각 기초단체로 이전확정해 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경상북도로 이관됨에 따라 사실 시군의 정신적인 입장으로는 이중고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지역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음으로 균형발전 취지에 맞는 적절한 유치가 되도록 신중함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12만 상주시민 모두가 희망하고 열망하는 공공기관이 유치되어 우리 고장 상주의 자존심과 명예를 드높이고 신행정중심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등 경상북도의 북부지역의 성장거점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을 크게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공공기관 유치 당위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기대의원 ◎

김기대의원입니다.

지난번 6월7일 제199회 임시회 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공무원정원개정 조례안을 의결 통과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재선충으로 인해서 산림보호과 과장 자리 하나, 담당 자리 하나, 공무원 4석을 증원 의결했습니다.

그 직전에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 조합장으로부터 여러 의원님들 책상 위로 공문이 한 통 날아왔습니다. 다 읽어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은 이번 제199회 임시회에서 이 정원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경상북도 도청 집행부와 도의회 의원을 공공의 적으로 삼고 앞으로 대응하겠노라고 강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무국장, 과장은 엄중 문책하고 처벌을 해야 한다, 그리고 도의회 의장은 공무원노동조합과 공개토론을 하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에서 도의회 의원을 폄하하고 모욕적인 언사와 실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그저 잘하자고 하는 것이겠지,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하는 말이겠지, 이렇게 늘 듣고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상임위원회까지 와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저지르면서 비아냥거리고 전체 의회를 겨냥해서 공공의 적으로 삼고 대응하겠다는, 그것도 구두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은 또 모르겠지만 정식 노조위원장의 직인을 찍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노동운동은 있어야 된다고 개인은 동의를 늘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이나 노동운동이 어떠냐고 물을 때마다 건전한 노동운동,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동의받는 노동운동은 반드시 있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해 왔고 또 경상북도 도청 노동조합 조합원도 잘하고 자기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다고 긍정적인 평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이런 태도를 밝히는 것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오늘 집행부의 이의근 지사도 나오지 않고 주무국장도 나오지 않았고 교육감도 나오지 않았는데 민선자치 10주년이 되는 날이고 200회 되는

날입니다. 보통 100회, 200회라고 하면 상당한 비중을 달리 보는데, 얼마나 바빠서 어디에 갔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관리하는 3,883명 공무원 중에서 763명이 서명 날인을 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공문 내용의 어구를 보고 적당한 표현인지 아니면 너무 과격한 표현인지, 개인 기업체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는 수도 있지만 그것도 공무원이, 이 나라가 많은 격변기에 처할 때마다 공무원의 기강이 흔들리지 않고 위계 질서가 섰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18개라고 하는 위원회가 청와대에 있었지만 노무현 정권은 5개가 더 불어나서 23개라고 하는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산림보호과를 하나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 위인설관이다, 위인설관이 뭐니까? 아무 필요 없는 직책을, 벼슬을 하나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경상북도 지사도 도민이 뽑았고 우리 도의회 의원은 경상북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우리가 경상북도지사 보고 행정을 따지고 감시, 감독, 비판, 견제를 하지 노동조합원 보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민이 도의원을 뽑아서 도정활동을 잘 펴 주시오 하고 보냈는데 지사도 이의근 지사가 잘하니까 지사 한 번 더 해 봐라 하고 보냈는데 이제 안방까지 침범을 해서 공공의 적으로 삼겠다, 5백만 선량한 국민을 죽인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하고도 주적이라는 개념, 적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동반자로서 악수 한번 하고는 큰 영웅이나 된 것같이 언론이 비추는데 우리는 도민을 위해서 그동안에 열심히 일해 왔는데 공공의 적으로 삼겠다는 그 용어를 이의근 지사는 읽어봤는지 안 봤는지, 읽어봤으면 그런 용어를 쓰고 의회에 도전하는 경상북도 도청 노동조합원들에게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는지, 그리고 우리 도의회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는 그러한 언사를 했는 노동조합원에게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못 독이 터지는 것은 한꺼번에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구멍으로 인해서 못 독이 터집니다. 처음에는 그렇거니 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혁신 차원에서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이런 데까지 하니 머지않아서 도지사실도 점거하고 도의회 의장실 점거할까 싶어서 깊이 우려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레임덕 현상인지 아니면 어떤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도지사가 청와대에 가서 혁신정책을 가장 잘했다고 모범사례발표를 해 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사실에서 자랑하고 싶어서 실·

국장을 회의를 부치니 전부 나오지도 않고 한두 사람만 나오고 다 모두 어디들 갔습니까? 예? 다 어디 갔다 왔어요? 일선시군 시장, 군수 선거 운동 하러 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빠서 못 나왔어요?

옛말에 사람은 강을 뵈니다. 이제 이러쿵저러쿵 행동을 해도 별 간섭할 사람이 없고 이렇게 해도 도의회에서 그저 뭐...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잠지를 마라고 해서 그런지 별 반응도 없고 뭐가 뭔지 모르니 이제 마음대로 한번 떠들어보자 하는 그런 논리로 말하는 것인지, 경상북도지사의 관할에 속해 있는 공무원이지 도의회에 속해 있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제 집행부도 걱정입니다. 중앙정부 눈치 보랴, 도의회 눈치 보랴, 거기에 또 하나 노조위원의 눈치를 봐야 하니 이 나라의 이 도의 도민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습니다. 이 노동운동 하는 분들의 건전한 운동, 민주적인 운동, 도민의 칭송을 받는 운동은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도민이 뽑은 도의원을 공공의 적으로 삼고 대응하겠다고 하면 그 증원을 시켜 달라고 올린 도지사는 더 큰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도의원은 통과시켰으니까 도민의 적이고 그것을 통과시켜달라고 올린 도지사는 무슨 적이 되어야 됩니까? 또 적으로 평가하는 그 노동조합원은 국민의 적입니까, 무엇의 적입니까?

앞으로 정신 차리세요. 정말 누수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는 도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국민이 추앙하는 그런 공무원이 도의회를 상대로 해서 도전이나 하고 적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것은... 집행부 오늘 지사도 없고 교육감도 나오지 않았으니 별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김용대 행정부지사를 비롯해서 주무 실·국장, 당당히 참모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권중연의원 ◎

안동시 출신 기획과학위원회 권중연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문제는 경북도의 균형발전의 도정문제의 아주 중대사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동료의원님과 함께 같은 주제로 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지방화시대를 맞아 참여정부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리멸렬한 연기를 거듭하여 오다가 드디어 지난 6월24일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지역을 확정 발표함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아 그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그동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인구의 과밀화와 자원의 편중화 현상을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이지만 한편으로는 지역간 소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등 벌써부터 지역 상호간의 대립과 갈등, 불신과 반목이 깊어져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공공기관의 이전은 거시적 차원에서의 국가균형발전과 미시적 차원에서 지역간 공동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원칙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순위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기관 이전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은 지역 내 인구수가 아니라 지역면적이 이전의 중심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도내 각 시군의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살펴보면 확고한 원칙과 기준도 없이 무조건 우리지역 내로 와야 한다는 핼피(PIMPITY)현상마저 만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북 북부지역은 우리 도 전체 면적의 56.7%나 차지하는 광대한 면적임에도 인구는 겨우 30% 정도로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타 지역에 비해 대단히 열악한, 인구 또한 급격한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북부

지역의 요충지인 영주, 예천, 안동을 경계지역으로 트라이앵글축을 형성, 농업혁신 및 혁신도시 건설 거점성장도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공공기관 이전에서 인구지수 중심으로 추진한다면 도내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도의 공공기관 이전 상황을 보면 한국전력기술은 당초 안동, 구미, 포항, 한국도로공사는 김천, 구미, 상주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영천이 유치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그간 해당기관을 대상으로 열심히 유치활동을 해왔으며 일부지역은 선호도 조사 등 용역결과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고를 무시하고 같은 도내 일선시군끼리 상대지역의 유치 기득권을 무시하고 무조건 덩치가 큰 기관을 우리지역에서 차지하고 보자는 막무가내식 유치활동은 지방자치제도 실시의 목적인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근본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양식 있는 행동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느 정도 자생력의 기반을 갖춘 지자체도 경북의 경쟁력 제고와 도내 전체 균형발전은 생각지도 않은 채 경북 논리가 아닌 대구식 논리로 공공기관 다수를 대구 인근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시도야말로 이성적 정도에서의 일탈행위로 이전투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공공기관 유치 과다경쟁으로 재정이 취약한 시군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자녀학비면제, 세금감면의 과격적 특혜 약속남발이 빈번한 이 시기에 본의원은 같은 도내 시군끼리 서로 과열 유치경쟁을 자제하고 보다 함께 잘 사는 경북을 건설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하여 몇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도가 유치신청한 공공기관이 경북도로 배정된 경우 모든 시군은 이들 시군의 기득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향후에 유치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 공공기관이전 문제는 단순한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차원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중대사안이므로 공공기관 이전 결정 시 앞서 언급한 바대로 인구수보다 면적지수를 중시하여 도내 23개 시군 모두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대구인근 지역에서 도시로서의 자생력을 어느 정도 갖춘 자치단체

는 냉철한 이성으로 경북 전체의 균형발전이란 전제하에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13개 공공기관의 도내 이전 시점에서 대구시 소재 도산하 단위 기관도 명분과 낙후도 등을 감안하여 경북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29일 우리 도는 농업기술원, 친환경생명산업지원연구소,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종합건설사업소 등 도 단위 산하 7개 기관의 경북지역으로의 이전을 발표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공무원교육원은 예천의 경도대학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북개발공사는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영주를 중심축으로 봉화, 영양, 청송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기합니다.

다섯 째, 가칭 공공기관입지선정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위원회의 위원선정은 앵무새처럼 말쑥하나 뽀내며 자가당착에 도취되어 이론적 우월성만을 과시하는 일부 대학교수 등 학계인사는 일체 배제하고, 의회의 의원을 포함하여 그간 지방분권 운동에 실무가 탁월한 인사를 권역별로 균형있게 안배·선정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공공기관 도내유치를 위해 지금까지 고생한 집행부는 오늘의 공공기관이전 정책이 경상북도가 골고루 잘 살 수 있고 대외적으로 자생력을 높이는 데 가장 혁신적으로 기여했다는 후세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공평무사하게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05년 7월 11일(월) 제2차 본회의

◎ 한혜련의원 ◎

영천출신 경제문화위원회 소속 한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대상지역이 확정된 이후 이제 경북도내 시·군의 공공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극심한 갈등과 반목마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공공기관 시·군 이전 문제로 촉발된 것이지만 심지어 경상북도를 분도해야 한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경북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과연 무엇이 바람직한 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공기관 시·군 배치와 관련하여 몇 가지 기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기관 시·군 배치는 집행부, 의회, 전문가 등의 참여하는 입지 선정위원회 등을 구성을 통하여 가장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큰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선정위원회의 일정한 결과물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운영도 적극 검토하여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현재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는 도산하기관의 이전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함께 검토되어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는 갈등과 반목을 불식시키고 하나된 경북의 미래적 발전을 위해 선정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일정한 연구결과에 대해서 위원회의 공식 활동에 모두가 깨끗이 승복한다는 협약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기관 시·군의 배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북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시

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자유경쟁 체제를 전제로 하는 지방분권시대에 지역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고려하여야 할 것은 공공기관 시·군배치가 단순히 경북도만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원, 이전대상 기관의 의사, 대구시와의 협력 문제 등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와 전남이 광주 인근 전남에 혁신도시를 공동 조성기로 한 선례만 본다 하더라도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셋째, 공공기관 시·군 배치 시에는 기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시·군의 기여도와 지역적 특성, 즉 지역산업과 기능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영천시의 경우 경북대와 더불어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대 수의과학대학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이미 지난 2004년 3월에 체결한 바 있으며, 영천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경북대 수의과학대학 이전부지를 제공하기로 하고 경북대는 영천시의 유치활동에 공동 노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영천은 지역축산발전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각 가축시험의 새로운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전적인 노력들과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기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공공기관 지방배분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분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시·군 배치 시 이러한 기준과 노력과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공공기관 이전대상이 이미 결정된 이후에 와서야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등 논리는 일반 상식적인 정서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공공기관의 시·군 배치가 아무리 지역의 사활을 걸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지역의 갈등과 반목이 가져와 지역화합을 깨뜨리는 것이라면 안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이 분명합니다.

본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갈등과 반목을 불러오는 소모적이고도 대립적인 시·군간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경쟁 일변도의 양상을 과감히 불식시키고 우리 경북도민의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합리적이고도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권중연의원 ◎

안동시 출신 기획과학위원회 권중연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1일 1차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혁신제안이라는 주제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 또다시 경북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최고의 낙후지역인 북부지역의 미래와 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비장한 각오와 결연한 심정으로 의정단상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청하고 계시는 선배 ·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과거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경북북부지역이 과연 어떠한 지역인가는 제가 굳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경북북부지역은 과거 국가주도의 발전전략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지역발전에 있어서 지원은커녕 관심밖의 불모지역으로 남아 있음을 아무도 부인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분권과 분산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추진을 국정의 혁신과제로 선정하면서 경북북부지역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지역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금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제반추진 과정을 보면 또다시 경북북부지역은 엄청난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척박한 이 지역에서 터를 잡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 역시 엄청난 실망과 고통속에 빠져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밝히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 비장한 각오와 결연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수도권과 충남, 대전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지역산업 정도를 고려한 혁신도시를 한 개씩 건설하기로 하고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일괄 수용토록 하는 기본원

칙과 함께 혁신도시 건설기준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본방침도 조만간 제시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상북도 전체 주민의 여론도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일련의 과정과 절차도 없이 대구·경북지역이 공공기관 유치로 인한 지역발전의 파급효과를 높인다는 명분하에 대구 12개, 기관 경북 13개 기관이 한 개의 공동혁신 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일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이 제시되는 등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돌출 대안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7일 대구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성공적 이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균형개발분과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전공공기관은 지리적으로 한 곳에 집중이 되어야 도시규모가 크질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과 역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라는 허구의 논리로 대구·경북 혁신도시 통합과 대구인근 지역 건설 주장을 공공연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가 한시적이기는 하나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받는 단체로 지난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안은 대단히 잘못된 졸속 대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간 11개 시·군 혁신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경북북부지역의 무수한 노력을 배제시킴으로서 북부지역의 꿈과 희망을 한순간에 수포로 돌리려는 엄청난 배신과 음모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경북북부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지역주민과 더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보기에 대구경북통합혁신도시 건설 핵심의 논리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용의성과 공공기관 이전과 병행될 이전 주민들 대도시 접근성 등 정주여건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 외에 어떠한 정당성과 설득력도 없는 단견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배치기준이라기 보다 오히려 도시규모를 키우기 위한 억지의 논리에 불과

합니다.

예컨대 대구·경북지역에 이전할 공공기관 중 개별기관을 제외한 기능군과 지역전략산업 연관 측면에서 보면 역지논리라는 사실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대구의 경우 구미, 포항, 울산 등 산업집적지 기능을 지원하는 거점도시 강화를 위한 산업지원 기능이 포진된 반면 경북지역의 경우 상주, 문경, 안동, 영주, 의성, 청송, 영덕을 지원하게 될 농업지원 기능군과 행정복합도시와 광역교통망 연결을 지원할 도로지원 기능군 등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상이한 기능군을 하나의 혁신도시내에 건설하여 어떻게 공공기관 기능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는지 본의원이 보기에 이러한 역지발상은 균형발전에 핵심적 지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낙후성 측면에서 보면 더욱 확연합니다. 지역 낙후성을 감안한다면 단연코 북부지역으로 경북북부지역 11개 시·군은 현재 평균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으로 이 지역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 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대구경북통합혁신도시 건설은 혁신도시가 아니라 대구의 위성도시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을 단언하며 이러한 역지논리를 종식시키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 경북 단독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성공적 이전을 위한 여러 과제들을 공정한 입장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위원회의 인적구성, 합리적인 절차의 제시, 선정기준의 투명성, 자치단체와 이전기관과의 의견조정, 기구설치 등 경북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자세로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제안이야 말로 21세기 무한 경쟁에 돌입한 세계무대에서 경북북부지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춘 지방으로 양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본의원의 제안이 경북 전체 국민의 이해와 염원에도 일치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경북도가 절

대로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및 배치에 고생하시고 앞으로는 많은 부분을 함께 할 집행부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혁신도시는 경북도민 전체의 자산이라는 견지에서 집행부는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전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면 그렇게 될 경우 본의원도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현안사항에 협조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감스럽게도 집행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경북이 대구·경북통합 혁신도시에 끌려가는 인상을 도민에게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사무관 이상 270분 공무원 주민등록 현황을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5급 이상 사무관 270명 중 246명이 대구시내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특이한 것은 서울시로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 집행부 공무원께서 경북도정을 사랑하고 정도로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개인의 신상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정말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중심을 잡으시고 과연 혁신도시가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도정이 어떻게 가는 것이 정말 정도로 가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5분자유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VIII. 신상발언

□ 2005년 7월 1일(금) 제1차 본회의

◎ 김진기의원 ◎

안녕하십니까? 영덕출신 김진기의원입니다.

예결위원선임의건에 이의발언을 할까 했었는데 이렇게 신상발언으로 올라왔습니다.

본의원이 예결위원선임의건에 제외된 건에 대해서 통탄을 금할 길이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이철우의장님께서 심사위원 추천을 하실 때 한 모욕적인 어떤 언사입니다. 3명의 조선의원들은 심사대상에서조차 제외를 하겠다는 이러한 소리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조금 더 배워서 해라, 또는 애기들 엄마 젖 좀 먹고 와라는 소리입니다. 즉 4선, 5선이상의 의원이 되어야지만 일을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조선 때처럼 초심의 마음으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4선이상인 되어야지만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은 어찌면 우리 동료의원들 모두를 모욕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철우의장님께 이런 발언에 대한 사과를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예결위선임의건에 대해서는 그 건에 중요한 심사숙고해야 될 사안이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한 후에 다시 그 안을 처리해 줄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 록

【조례안 : 5건】

-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우수 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 7. 11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0조 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포항북부소방서	포항시 북구 덕산동 116-7	포항시 북구 일원, 영덕군 일원
포항남부소방서	포항시 남구 일월동 234	포항시 남구 일원, 울릉군 일원
경주소방서	경주시 황오동 389-11	경주시 일원
김천소방서	김천시 지좌동 726-4	김천시 일원
안동소방서	안동시 범홍동 32-9	안동시 일원, 청송군 일원, 영양군 일원
구미소방서	구미시 공단동 207	구미시 일원
영주소방서	영주시 문수면 적동리 125-1	영주시 일원, 봉화군 일원
영천소방서	영천시 성내동 48-23	영천시 일원
상주소방서	상주시 서성동 55-1	상주시 일원
문경소방서	문경시 흥덕동 534-1	문경시 일원, 예천군 일원
경산소방서	경산시 조영동 314	경산시 일원, 청도군 일원
의성소방서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700-3	의성군 일원, 군위군 일원
성주소방서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49	성주군 일원, 고령군 일원
칠곡소방서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산5-1	칠곡군 일원
울진소방서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363	울진군 일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 7. 11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3,883”을 “4,021”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821”을 “1,836”으로 하며, 동조 제2호중 “1,925”를 “2,048”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집행기관의 정원 중 90명은 한시정원으로서 혁신분권 담당관실 운영인력 14명(4급1, 5급4, 6급5, 7급4)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재정과 복식부기업무 추진인력 4명(5급1, 6급1, 7급1, 기능10급1)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운영인력 14명(4급1, 5급3, 6급3, 7급5, 기능10급2)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종합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단 운영인력 17명(4급1, 5급4, 6급5, 7급6,

기능10급1) 및 전국체전기획단 운영인력 15명(4급1, 5급3, 6급3, 7급6, 8급1, 기능

10급1)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산림환경연구소 4명(5급1, 6급1, 7급1, 8급1)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 운영인력 22명(4급1, 5급2, 6급5,

7급2, 8급4, 연구사4, 기능9급3, 기능10급1)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 계			4,021	1,137	93	2,404	387
정 무 직			1	1			
일 반 직	소 계		1,308	934	55	75	244
	2~3급		1		1		
	3 급		7	6		1	
	4 급		63	42	7	5	9
	5 급		245	196	8	17	24
	6 급		445	320	18	27	80
	7 급		469	333	20	22	94
	8 급		78	37	1	3	37
별 정 직	소 계		33	22	5	5	1
	1급상당		1	1			
	3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4	4			
	6급상당		13	7	2	4	
	7급상당		7	6		1	
	8급상당		4	2	1		1
연 구 직	소 계		196	2		161	33
	연구관		28	1		26	1
	연구사		168	1		135	32
지 도 직	소 계		28			25	3
	지도관		7			6	1
	지도사		21			19	2
소 방 직	소 계		2,048	47		1,997	
	소방정		17	2		15	
	소방령		39	9		30	
	소방경		76	7		69	
	소방위		141	11		130	
	소방장		278	12		266	
	소방교		574	9		565	
	소방사		923	1		922	
기 능 직	소 계		363	127	33	97	106
	6 급		11	5	1	3	2
	7 급		32	18	3	5	6
	8 급		56	12	6	17	21
	9 급		117	36	4	37	40
	1 0 급		147	56	19	35	37
교 원	소 계		44			44	
	학 장		1			1	
	교 수		32			32	
	조 교		11			1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3,883명</u> 으로 하며, 다 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1,821명</u> 2. 소방본부·소방학교·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u>1,925명</u> 3. ~ 4.(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u>4,021</u> 1. <u>1,836</u> .. 2. <u>2,048</u> .. 3. ~ 4.(현행과 같음)	정원조정
부칙(2005. 6. 27)	부칙(2005. 6. 27)	
①(생략)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집행기관의 정원 중 75명(혁신분권담당관실 운영 인력 14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재정과 복식부기 운영인력 4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단 운영인력 14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경북종합문화테마파 크조성사업단 운영인력 17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산림환경연 구소 조정사업추진인력 4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산림자원종합개발사 업소 인력 22명은 2005년 12월 31 일까지)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①(현행과 같음)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집행기관의 정원 중 90명은 한시정원으로서 혁신분권담당관실 운영인력 14명 (4급1, 5급4, 6급5, 7급4)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재정과 복식부기업무 추진인력 4명(5급1, 6급1, 7급1, 기 능10급1)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 교문화권개발사업단 운영인력 14명 (4급1, 5급3, 6급3, 7급5, 기능10급2) 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종합문화 테마파크조성사업단 운영인력 17명 (4급1, 5급4, 6급5, 7급6, 기능10급1) 및 전국체전기획단 운영인력 15명(4 급1, 5급3, 6급3, 7급6, 8급1, 기능10 급1)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산림환 경연구소 4명(5급1, 6급1, 7급1, 8급 1)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산림자 원종합개발사업소 운영인력 22명(4 급1, 5급2, 6급5, 7급2, 8급4, 연구사 4, 기능9급3, 기능10급1)은 2005년 12 월 31일까지 운영한다.	한시정원 조정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 7. 11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경상북도세”를 “경상북도세(이하 “도세”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를“「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로 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세”로 하고, 동조 동항제1호중“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을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 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6조의 제목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를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및 제3호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각각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을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시설현대화 및 시장활성화 촉진”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한다.

제1조, 제11조제1항, 제14조본문, 제15조본문,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32조 내지 제34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조제1항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중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 동조제3항제1호, 동조동항제3호 및 제11조제1항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

로 하고, 제4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제6조중 “민법”, “의료법”을 각각 “「민법」”, “「의료법」”으로 하고, 제7조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하고, 제8조제1항제1호중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한국노동교육원법”을 “「한국노동교육원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6호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육성법」”으로 하고, 제9조중 “교육기본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하고, 제10조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중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대외무역법”을 “「대외무역법」”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중 “부가가치세법”, “주택법”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중 “임대주택법시행령”을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4조 및 제15조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제18조제1항제1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각각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각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오지개발촉진법”을 “「오지개발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동조제3항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0조제1항중 “지방공기업

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제21조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제23조제1항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시행령”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제24조제1항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하고, 제26조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제27조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8조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제29조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경상북도세(이하 “도세”라 한다) ----- ----- ----- -----.	조문의 간결화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①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①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 ----- ----- ----- ----- ----- ----- ----- -----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세-----.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1.----- -----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임대주택용-----.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동시설세를 면제함

[illegible]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확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②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시설현대화 및 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는 사업계획승인일----- ----- ----- ----- ----- ②「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시설현대화사업----- ----- ----- ----- -----	

경상북도우수농산물표시제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 7. 11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우수농산물표시제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우수농산물표시제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우수농산물표시제의운영에관한조례”를 “경상북도우수농산물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중 “【별표】”를 “별표”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로 하고, 동조제2호가목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를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경상북도우수농산물 심벌마크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별표” 인용표기 방법 변경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우수농산물표시”(이하 “상표”라 한다)라 함은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심 벌마크를 말하며, 그 표시는 【별표】 와 같다.	2. ----- ----- ----- 별표 -----.	2. ----- ----- ----- 별표 -----.	2. ----- ----- ----- 별표 -----.	
제3조(상표사용 신청자격) ①(생략)	제3조(상표사용 신청자격) ①(현행 과 같음)	제3조(상표사용 신청자격) ①(현행 과 같음)	제3조(상표사용 신청자격) ①(현행 과 같음)	관계법률 및 동법 시행령 분리개정 에 따른 관련법령 명칭 변경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해당 생산품목이 <u>농수산물가 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법률</u> <u>시행령 제22조</u> 규정에 의해 인증 을 받았거나, 관련기관단체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자	가. ----- <u>농산물</u> <u>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u> ----- ----- ----- -----	가. ----- <u>농산물</u> <u>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u> ----- ----- ----- -----	가. ----- <u>농산물</u> <u>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u> ----- ----- ----- -----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개정이유
2. (생략) 가. 경상북도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하여 자가시설에서 상품을 생산하는자로서, <u>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u> 규정에 의해 인증을 받았거나 관련기관단체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자 나. (생략)	2. (현행과 같음) 가. ----- ----- -----, <u>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 제22조</u>----- ----- ----- ----- 나. (현행과 같음)	관계법률 및 동법시행령 분리개정에 따른 관련법령 명칭변경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 7. 11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를 “경상북도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중 “학교보건법”을 “「학교보건법」”으로 하고, “동법시행령”을 “동
법 시행령”으로 하며 “경상북도교육감 및 관할 교육장“을 ”교육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9인 이상 15인 이내”를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하고, 동
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소속직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를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가 위원 총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

선한다.

제3조중 "지역사회 유지"를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로 한다.

제4조제1항중 "회무를 통리하며"를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위원회는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하급 교육청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2항중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를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2005. 10. 1부터 시행한다.

② (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정화위원회 위원 선출에 관한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경상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학교보건법</u> 제6조 및 <u>동법시행령</u>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의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u>경상북도교육감</u> 및 <u>관할 교육장</u>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학교보건법</u> 」----- ----- <u>동법</u> <u>시행령</u> ----- ----- ----- <u>교육장</u> ----- ----- ----- -----.
제2조(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u>9인이상 15인 이내</u> 로 구성한다. ② 도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상북도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평생교육체육과장·재무관리과장·경상북도 보건위생과장·도시계획과장·경상북도 지방경찰청 방법과장 및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유지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은 학부모이어야 한다.	제2(조직) ①----- ----- <u>13인 이상 17인</u> <u>이내</u> -----. <u><삭제></u>

현행	개정안
③ 하급교육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임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은 교육청 공무원 및 관련기관 공무원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유지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은 학부모이어야 한다. 제3조(임기) 위원중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유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생략) ③ 도위원회는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하급교육청위원회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지의 여부를 심의하며 기타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은 소속직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를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임기)----- -----지역 사회 관련 전문가----- ----- -----. 제4조(직무) 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 ----- ----- ----- ----- ----- -----.

현행	개정안
제5조(회의) ① (생략)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수당과 여비) ① (생략) ②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u>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실비 변상조례</u>를 준용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① (현행과 같음) ② -----「<u>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실비 변상 조례</u>」를 준용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생략) ② <u>도위원회의 간사는 사회체육보건과 학교보건업무담당사무관으로, 서기는 평생교육체육과 학교보건업무담당자로 하고 하급교육청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당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u> ③ (생략)	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u>간사 및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u> ③ (현행과 같음)

【결산안 : 2건】

- 200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0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1. 소관기관 : 경상북도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6. 27,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5. 7. 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0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 2004.7.6,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상정·질의

○ 2004.7.7,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상정·질의·토론·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이병우)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200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200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결산

4. 세입 · 세출 결산

1) 결산규모

가. 총괄

○ 200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503억 5,133만 원을 포함하여 3조 2,273억 1,133만원이었으나
- 세입결산액은 3조 4,303억 7,973만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3조 541억 3,844만원으로
- 3,762억 4,129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26억 102만원임

< 세입 · 세출 결산 규모 >

(단위 : 억원)

회 계 명	예산현액 (A)	결 산 액			잉 여 금 내 역		
		세입 (B)	세출 (C)	세계잉여금 (B-C)	이월사업비	보 조 금 집 행 잔 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32,273	34,304	30,541	3,763	1,312	125	2,326
일 반 회 계	26,704	26,925	25,126	1,799	1,256	125	418
특 별 회 계	5,569	7,379	5,415	1,964	56		1,908

나. 회계별 규모

(1) 일반회계

○ 2004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413억 1,323만원을 포함하여 2조 6,704억 1,323만원이었으나
- 세입결산액은 2조 6,925억 1,569만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2조 5,126억 4,611만원으로
- 1,798억 6,958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7억 9,964만원임

(2) 특별회계

○ 2004년도 경상북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0억 3,810만원을 포함하여 5,568억 9,810만원이었으나
- 세입결산액은 7,378억 6,404만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5,414억 9,232만원으로
- 1,963억 7,172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08억 138만원임

＜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규모 ＞

□ 회계별 결산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예 산 현 액	3,227,311	100.0	2,670,413	100.0	556,898	100.0
세 입 결 산 액 (A)	3,430,379	106.3	2,692,515	100.8	737,864	132.5
세 출 결 산 액 (B)	3,054,138	94.6	2,512,646	94.1	541,492	97.2
잉 여 금 (A-B)	376,241	11.7	179,869	6.7	196,372	35.3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보조금사용잔액 순 세계 잉여금	72,498	-	69,804	-	2,694	-
	58,658	-	55,782	-	2,876	-
	12,484	-	12,484	-	-	-
	232,601	-	41,799	-	190,802	-

□ 회계별 결산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예 산 현 액 (A)	결 산 액			잉 여 금 내 역		
		세 입 (B)	세 출 (C)	세계잉여금 (B-C)	이 월 사업비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32,273	34,304	30,541	3,763	1,312	125	2,326
일 반 회 계	26,704	26,925	25,126	1,799	1,256	125	418
특 별 회 계	5,569	7,379	5,415	1,964	56		1,908
공 기 업	소 계	2,935	4,756	1,896	-	-	1,896
	지역개발기금	2,935	4,756	1,896	-	-	1,896
기 타	소 계	2,634	2,623	68	56		12
	의료급여기금	2,059	2,059	1	-	-	1
	치 수 사 업	425	409	37	37	-	-
	경도대학운영	81	82	14	7	-	7
	광역교통시설	69	73	16	12	-	4

2) 세입결산

가. 총괄

- 2004년도 세입결산액은 3조 4,303억 7,973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3조 2,273억 1,133만원 보다 2,030억 6,840만원 이 증가(6.3%)하였으며
- 그중 일반회계가 78.5%인 2조 6,925억 1,569만원이고,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가 21.5%인 7,378억 6,404만원임.
- 2004년도 미수납액은 578억 287만원으로서, 72억 4,789만원을 결손처분하고 505억 5,498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 세입부문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수납율(%) (C/B)
					결손처분	익년도이월	
합계	3,227,311	3,488,183	3,430,380	57,803	7,248	50,555	98.3
일반회계	2,670,413	2,749,059	2,692,516	56,543	7,247	49,296	97.9
특별회계	556,898	739,124	737,864	1,260	1	1,259	99.8
공기업특별회계	293,520	475,633	475,633	-	-	-	100.0
기타특별회계	263,378	263,491	262,231	1,260	1	1,259	99.5

※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3,227,311백만원 2,976,960백만원 250,351백만원

나. 회계별 내역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조 6,925억 1,569만원으로 예산현액 2조 6,704억 1,323만원 보다 221억 246만원(0.8%)이 증가 되었으며
- 재원별 수납내역은, 지방세 6,013억 5,630만원, 세외수입 3,372억 7,394만원, 지방교부세 4,262억 2,600만원, 증액 교부금 364억 487만원, 지방양여금 1,552억 9,863만원, 국고보조금 1조 1,106억 5,595만원, 지방채 253억원임.
- 미수납액은 565억 4,283만원으로, 72억 4,710만원을 결손처분 하고 나머지 492억 9,573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부문 재원별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결 손 처 분	익년도 이 월	C/A	C/B
합 계	2,670,413	2,749,059	2,692,516	56,543	7,247	49,296	100.8	97.9
지 방 세	568,000	657,034	601,356	55,678	7,217	48,461	105.9	91.5
세 외 수 입	339,574	338,139	337,274	865	30	835	99.3	99.7
지방교부세	426,728	426,226	426,226	-	-	-	99.9	100.0
증액교부금	49,496	36,405	36,405	-	-	-	73.6	100.0
지방양여금	149,680	155,299	155,299	-	-	-	103.8	100.0
보 조 금	1,111,635	1,110,656	1,110,656	-	-	-	99.9	100.0
지 방 채	25,300	25,300	25,300	-	-	-	100.0	100.0

$$\text{※ 예산현액} = \frac{\text{예산현액}}{2,670,413\text{백만원}} = \frac{\text{예산액}}{2,429,100\text{백만원}} + \frac{\text{전년도이월액}}{241,313\text{백만원}}$$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378억 6,404만원으로 예산현액 5,568억 9,810만원보다 1,809억 6,594만원(32.5%) 이 증가되었으며
- 회계별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4,756억 3,265만원, 의료급여 기금운영 2,058억 9,765만원, 치수사업 408억 8,432만원, 경도대학운영 81억 5,738만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가 72억 9,204만원임.
- 미수납액은 12억 6,004만원으로, 79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2억 5,925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음.

< 특별회계 세입부문 재원별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결 손 처 분	익년도 이 월	C/A	C/B
합 계	556,898	739,124	737,864	1,260	1	1,259	132.5	99.8
지역개발기금	293,520	475,633	475,633	-	-	-	162.0	100.0
의료급여기금	205,842	205,908	205,898	10	-	10	100.0	100.0
치 수 사 업	42,495	41,546	40,884	662	1	661	96.2	98.4
경 도 대 학	8,130	8,157	8,157	-	-	-	100.3	100.0
광역교통시설	6,911	7,880	7,292	588	-	588	105.5	92.5

$$\begin{array}{lcl} \text{※ 예산현액} & = & \text{예산액} + \text{전년도 이월액} \\ 556,898\text{백만원} & & 547,860\text{백만원} \quad 9,038\text{백만원} \end{array}$$

3) 세출결산

가. 총괄

- 2004년도 세출결산액은 3조 541억 3,844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조 2,273억 1,133만원 대비 94.6%를 지출하였으며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조 5,126억 4,611만원, 특별회계에서 5,414억 9,232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음
- 집행잔액 2,231억 7,290만원중 이월사업비 1,311억 5,63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420억166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세출부문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잔액)	지출비율 (B/A)
합계	2,976,960	3,227,311	3,054,138	131,156	42,016	94.6%
일반회계	2,429,100	2,670,413	2,512,646	125,586	32,181	94.1%
특별회계	547,860	556,898	541,492	5,570	9,835	97.2%

나. 회계별 내역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2조 5,126억 4,611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2조 6,704억 1,323만원 대비 94.1%를 지출하였음.
- 성질별 지출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3,125억 7,282만원, 사회개발비
8,677억 7,264만원, 경제개발비 1조 426억 6,539만원,
민방위비 1,156억 4,553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739억 8,973만원임.
- 집행잔액 1,577억 6,712만원중 이월사업비
1,255억 8,60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321억8,111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성질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현액 (B)	지 출 액 (C)	다음연도 이 월 액 (D)	불용액 (E)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C/B)	이월액 (D/B)	불용액 (E/B)
합 계	2,429,100	2,670,413	2,512,646	125,586	32,181	94.1	4.7	1.2
일반행정비	311,699	317,173	312,573	2,383	2,217	98.5	0.8	0.7
사회개발비	866,896	881,842	867,773	2,929	11,140	98.4	0.3	1.3
경제개발비	939,714	1,168,913	1,042,665	113,153	13,095	89.2	9.7	1.1
민 방 위 비	119,398	123,158	115,645	7,121	391	93.9	5.8	0.3
지원및기타경비	191,393	179,327	173,990	-	5,338	97.0	-	3.0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5,414억 9,232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5,568억 9,810만원 대비 97.2%를 지출하였음.
- 회계별 지출내역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2,860억 3,275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2,058억 957만원, 치수사업 371억 8,025만원, 경도대학 운영 67억 6,476만원, 광역교통시설 57억 499만원임.
- 집행잔액 154억 578만원중 이월사업비 55억 7,03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98억 3,544만원은 불용 처리 하였음.

< 회계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현액 (B)	지 출 액 (C)	다음연도 이 월 액 (D)	불 용 액 (E)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C/B)	이월액 (D/B)	불용액 (E/B)
합 계	547,860	556,898	541,492	5,570	9,835	97.2	1.0	1.8
지역개발기금	293,520	293,520	286,033	-	7,487	97.4	-	2.6
의료급여기금운영	205,842	205,842	205,809	-	32	100.0	-	-
치 수 사 업	36,179	42,495	37,180	3,700	1,615	87.5	8.7	3.8
경도대학운영	6,580	8,130	6,765	690	675	83.2	8.5	8.3
광역교통시설	5,739	6,911	5,705	1,180	26	82.5	17.1	0.4

다. 예산이용 · 전용 · 이체사용

- 2004 회계년도중 지방재정법 제38조 ·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 사용한 내역은 없으며,
- 공무원 교육훈련비 2천만원,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 개최 1억원, 일선 소방서 의무소방원 인건비 157만원, 국경일 행사 등 참석자 여비 보상 1,800만원 등 총 4건에 1억 3,957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 상세내역은 불임 “보조자료” 참조

라. 예비비 지출

- 2004년도 예비비 예산액 167억 7,820만원중, 폭풍피해 복구 외 14건에 120억 6,49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8억 2,061만원을 지출하고, 2억 4,4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상세내역은 불임 “보조자료” 참조

마. 채무부담 행위

-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2004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지방도 사업 등 7건에 225억 4,200만원임
※ 상세내역은 불임 “보조자료” 참조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사이버 낙동강 탐방 시스템 구축” 등 78건에 1,311억 5,634만원으로
 - 그 중 명시이월이 46건에 724억 9,853만원, 사고이월이 32건에 586억 5,781만원이며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이 44건에 698억 424만원, 사고이월이 24건에 557억 8,177만원 등 총 67건에 1,255억 8,601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이 3건에 26억 9,430만원, 사고이월이 8건에 28억 7,604만원 등 총 11건에 55억 7,033만원임
- ※ 상세내역은 붙임 “보조자료” 참조

5. 세입 · 세출외 결산

1) 기 금

가. 총 괄

- 2004년도말 경상북도가 설치 ·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7종으로서, 2003년도말 현재액 2,553억 9,242만원 보다 14억 416만원이 증가한 2,567억 9,658만원임

나. 기금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03년 말 현 재 액(A)	2004년도 증감			2004년 말 현 재 액 (E=A+D)
		수납액(B)	지출액(C)	증 감 (D=B-C)	
계 (17종)	255,392	130,737	129,333	1,404	256,796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1,883	1,127	1,521	-394	1,489
문화예술진흥기금	4,415	431	401	30	4,445
체육진흥기금	13,362	1,261	600	661	14,023
청소년육성기금	3,315	143	117	26	3,341
농어촌진흥기금	62,017	26,351	29,378	-3,027	58,990
중소기업육성기금	115,073	92,079	93,017	-938	114,135
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	3,280	10	91	-81	3,199
식품진흥기금	14,570	3,438	2,401	1,037	15,607
포플라장학기금	219	10	9	1	220
사회복지기금	5,686	279	54	225	5,911
재해구호기금	14,365	683	293	390	14,755
장애인복지기금	1,766	378	63	315	2,081
노인복지기금	2,470	103	100	3	2,473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1,515	85	88	-3	1,512
여성발전기금	2,203	595	-	595	2,798
재해대책기금	6,710	2,985	1,200	1,785	8,495
재난관리기금	2,543	779	-	779	3,322

2) 채권 및 채무

가. 채 권

- 2004년도말 현재 경상북도의 채권현재액은 7,551억 3,300만원
으로, 2003년도말 6,435억 8,483만원 보다 1,115억 4,818만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43억 1,200만원, 특별회계가 4,908억 2,100만원이고
- 종류별로는 보증금 채권이 2건에 12억 3,200만원, 융자금 채권이 6건에 7,539억 1백만원임

< 2004년말 종류별 채권 현재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채 권 내 역
계	755,133	264,312	490,821	
보증금채권	1,232	1,232	-	○ 일반회계 ● 서울사무소 등 숙소 임차 1,192 ● 전화 전용회선 가입 40
융자금채권	753,901	263,080	490,821	○ 일반회계 ● 중소기업육성기금 107,590 ● 농어촌주택지원사업 95,056 ● 농어촌진흥기금 39,185 ● 식품진흥기금 4,787 ● 공무원주거안정기금 16,462 ○ 특별회계 ● 지역개발사업비 490,821

나. 채 무

- 2004년말 경상북도의 채무현재액은 7,722억 849만원으로, 2003년도말 7,318억 9,134만원 보다 403억 1,715만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90억 4,740만원, 특별회계가 5,231억 6,109만원이고

- 종류별로는 지방채가 5,231억 6,109만원, 차입금이 2,265억 540만원, 채무부담행위가 225억 4,200만원임

< 2004년말 종류별 채무 현재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채 무 내 역
계	772,208	249,047	523,161	
지 방 채	523,161		523,161	○ 특별회계 ● 지역개발기금 차입 523,161
차 입 금	226,505	226,505	-	○ 일반회계 ● 정부자금 차입 50,400 ● 지역개발기금 차입 173,805 ● 청사정비기금 차입 2,300
채무부담행위	22,542	22,542	-	○ 일반회계 ● 지방도 정비사업 22,542

3) 공유재산 및 물품

가. 공유재산

- 2004년도말 경상북도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5,519억 5,469만원으로, 2003년도말 현재액 5,261억 4,700만원 보다 258억 769만원이 증가하였음
- 종류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 토지에서는 산림자원박물관 부지 등(248필지) 66억원과 도로건설 및 수해상습지 개선 등에서 86억원이 증가하였으나, 5일 장터 및 학정지구 보상 등으로 20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 건물에서는 소방청사, 축산기술연구소, 경도대학 등에서 314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소방파출소 건물멸실 등으로 3억원이 감소하였음

< 2004년말 종류별 공유재산 현재액 >

(단위 : 억원)

종 류 별	2003년도		2004년도		증 감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계		5,261		5,520		259
토 지	171m ²	4,514	184백만m ²	4,461		△53
건 물	619동	585	689동	896	70동	311
입 목 죽	546m ²	95	546천m ²	95		
공 작 물		9		9		
선 박	2척	21	2척	21		
항 공 기	1대	25	1대	25		
유가증권	247,248주	12	252,953주	13	5,705	1

나. 물 품

- 2004년도말 경상북도의 물품 현재액은 585억 9,497만원으로 2003년도말 현재액 535억 6,210만원 보다 50억 3,287만원이 증가하였음
-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 중형승용차(1대) 및 무선장비(118대) 등 업무용에서 4억원, 소방차(2대) 및 농경용 트랙터 등 사업용에서 46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음

< 2004년말 종류별 물품 현재액 >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도		2004년 도		증 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7,531	536	7,718	586	187	50
업 무 용	5,298	86	5,460	90	162	4
사 업 용	2,233	450	2,258	496	25	46

4) 금 고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2004년도말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금고에 대한
 결산은 세입 2조 9,547억 4,700만원,
 세출 2조 7,681억 600만원으로 1,866억 4,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30억원을 2005년도로 이입하고 연도말
 잔액은 1,836억 4,100만원임

＜ 2004년말 회계별 금고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세 입	세 출	2005년 이입	잔 액
합 계		2,954,747	2,768,106	3,000	183,641
일 반 회 계		2,692,516	2,512,646	3,000	176,870
특 별 회 계	계	262,231	255,460		6,771
	의료급여기금운영	205,898	205,810		88
	치 수 사 업	40,884	37,180		3,704
	경 도 대 학	8,157	6,765		1,392
	광 역 교 통 시 설	7,292	5,705		1,587

나. 세입 · 세출외 현금

- 2004년도말 경상북도 세입세출외현금의 잔액은
19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5억 6,900만원 보다
13억 6,2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 종류별로는 보관금이 3억 4,300만원, 기타 15억 8,800만원임

<2004년말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 류	2003년도말 현 재 액	2004년도			2004년도말 잔 액
		당기증가	당기지출	차 감 액	
합 계	569	33,068	31,706	1,362	1,931
보 증 금	10	70	80	△10	0
보 관 금	299	8,365	8,321	44	343
기 타	260	24,633	23,305	1,328	1,588

6. 전문위원(주근호) 검토의견

1) 총괄부문

가. 결산규모

- 2004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규모는 3조 541억 3,844만원으로서, 전년도 결산액 3조 5,086억 7,984만원 보다 4,545억 4,140만원(13%)이 줄어들었으며
- 이는 2004년도에 태풍 및 호우피해가 예년에 비하여 거의 없어 그에 따른 복구사업비도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세입 · 세출 부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6.3%인
3조 4,303억 7,973만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4.6%인 3조 541억 3,844만원
으로
- 3,762억 4,129만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 명시이월 724억 9,854만원, 사고이월 586억 5,680만원
등 이월사업비 1,311억 5,634만원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4억 8,393만원
 - 순세계잉여금 2,326억 102만원임

나. 재정운용 상황

- 경상북도의 최근 4년간 결산액을 기준으로 추이를 보면
세입부문은 연평균 7.5%, 세출부문은 8.2% 증가하고
있으나, 전년대비 2004년도 결산결과는 세입부문이
15.1%, 세출부문이 13.0%씩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회계별 전년대비 결과는 일반회계는 세입부문이 19.5%,
세출부문이 21.8%가 각각 줄어든 반면 특별회계는 세입
부문이 6.3%, 세출부문이 30.7%나 각각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의 감소요인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7.9%, 세외수입 5.0% 등 자체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교부세 41.0%, 지방양여금 40.1%, 보조금 21.8% 등 결산규모의 6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의존수입이 대폭 줄어들었음
- 의존수입의 감소원인은 2003년도에는 중앙부처의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가 많았으나, 2004년도에는 각종 재해발생이 거의 없었던 만큼 복구예산도 줄어든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됨
- 이러한 현상은 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자치역량의 강화 및 자체수입의 극대화를 위해 국세의 점진적인 지방이양과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시급히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4년간 결산액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신 장 율 (%)	
						연 평 균	전년대비
(A) 입	세 합 계	2,636,265	3,709,992	4,039,013	3,430,380	7.5	△15.1
	일반회계	2,126,443	3,072,282	3,344,954	2,692,516	6.7	△19.5
	특별회계	509,822	637,710	694,059	737,864	11.2	6.3
	공 기 업	316,670	412,907	447,709	475,633	-	-
	기 타	193,152	224,803	246,350	262,231	-	-
(B) 출	세 합 계	2,302,355	3,214,927	3,508,679	3,054,138	8.2	△13.0
	일반회계	1,972,765	2,819,146	3,214,926	2,512,646	6.9	△21.8
	특별회계	329,590	395,781	414,342	541,492	16.1	30.7
	공 기 업	148,702	186,456	182,237	286,033	-	-
	기 타	180,888	209,325	232,105	255,459	-	-
수 지 (A-B)		333,910 (12.7%)	495,065 (13.3%)	530,334 (13.1%)	376,242 (11.0%)	-	-

＜ 일반회계 전년대비 재원별 결산액 ＞

(단위 : 억원)

구 분	예 산 현 액		결 산 액		2003년 대비 증감	
	2003년도	2004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예산현액 (%)	결 산 액 (%)
계	33,608	26,704	33,450	26,925	△6,904(△20.5)	△6,525(△19.5)
지 방 세	5,450	5,680	5,574	6,014	230 (4.2)	440 (7.9)
세 외 수 입	3,165	3,396	3,213	3,373	231 (7.3)	440 (5.0)
지방교부세	7,202	4,267	7,218	4,262	△2,935(△40.8)	△2,956(△41.0)
증액교부금	-	495	-	364	495 (-)	364 (-)
지방양여금	2,654	1,497	2,592	1,553	△1,157(△43.6)	△1,039(△40.1)
보 조 금	14,387	11,116	14,203	11,106	△3,271(△22.7)	△3,097(△21.8)
지 방 채	750	253	650	253	△497(△66.3)	△397(△61.1)

2) 세입부문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규모

-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조 6,925억 1,569만원
으로, 그중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조 7,285억원 정도로
전체 세입의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9,640억원정도로 전체 세입의 35.8%에 그치고 있음

(2) 수납 및 미수납액 처리

- 지방세는 6,570억 3,43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013억 5,630만원을 징수하고 556억 7,807만원의 미수납금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금 중 72억 1,726만원은 결손처분
하고 나머지 484억 6,08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세외수입은 3,381억 3,86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372억 7,394만원을 징수하여 8억 6,475만원의 미수납금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금 중 2,983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8억 3,49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일반회계에서 결손처분한 총 72억 4,710만원의 내용은
무재산 40억 8,154만원, 행방불명 10억 6,032만원, 시효
만료 3억 3,461만원, 소송관련 재산공매시 무배당
6억 5,789만원 등임
- 그간의 지속적인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지방세 미수납액 484억 6,100만원에 대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지방세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 수 납 액			채납율(%) (C/A)
			계(C)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01년	538,661	491,442	47,219	2,987	44,232	8.8
2002년	607,576	555,188	52,378	2,107	50,271	8.6
2003년	612,682	557,352	55,330	7,363	47,967	9.0
2004년	657,034	601,356	55,678	7,217	48,461	8.5

< 지방세 미수납 사유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사 유 별				
		거소불명	무 재 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등	기타
지방세	48,461	6,129 (12.6%)	5,520 (11.4%)	8,315 (17.2%)	23,515 (48.5%)	4,982 (10.3%)

나. 특별회계

(1) 세입결산 규모

- 2004년도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7,378억 6,404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지역개발기금이 4,756억 3,265만원, 의료급여기금이 2,058억 9,765만원, 치수사업이 408억 8,432만원, 정도대학운영이 81억 5,738만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가 72억 9,204만원임

(2) 수납 및 미수납액 처리

- 2004년도중 총 7,391억 2,40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378억 6,404만원을 징수하고 12억 6,004만원의 미수납금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금 중 79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2억 5,92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특별회계 결산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다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를 보면, 세입 결산액이 4,756억원으로 예산현액 2,935억원 보다 162%나 초과하여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조기상환 및 공채 매출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나, 회계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3) 세출부문

가. 일반회계

(1) 세출결산 규모

-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조 5,126억 4,611만원으로, 예산현액 2조 6,704억 1,323만원의 94.1%를 지출하였음

(2) 예비비 지출

-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비비의 지출사유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그러나 2004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중 민사소송에 따른 보상금 등은 승소할 가능성이 낮을 경우 이를 미리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민사소송 강제조정 결정금 1,741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 지방5급 승진제도가 변경된 후 추경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승진시험에 필요한 경비 8,677만원을 확보치 않고 예비비로 지출하였음

- 이와 같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시급하지도 않은 사항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례는 향후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이월사업비 및 채무부담행위

-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하면 세출예산의 이월은

- ①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명시이월과
- ②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고이월
- ③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중 당해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계속비이월로 구분할 수 있음

- 2004년도 결산결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 44건, 사고이월 24건 등 총 68건에 1,256억원이 이월된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당해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세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연도내 완료하지 못할 사업비를 확보하여 이월하기 보다는 이를 줄여서 채무부담행위를 하여야 할 정도의 시급한 사업비로 충당하는 등 예산편성시 사업의 우선 순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

(4)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

- 세출결산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321억 8,111만원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70억 4,077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4억 1,983만원 등 94억 6,059만원은 예산편성 이후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예산편성시 검토가 부족하였거나 예산성립후 집행에 미온적이지는 않았는지 원인을 분석하여 예산을 사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보조금 사용잔액 116억 2,008만원이 발생한데 대해서도 우선 국비 확보에만 노력하고 집행에는 소홀 하여 반납하는 사례는 없는지, 사전 무리한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중단되어 반납하는 경우는 없는지 등 원인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비확보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원 인 별					
			계 획 변경취소	집행사유 미 발 생	예산절감	예 산 집행잔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 비 비
합 계	2,670,413	32,181 (100%)	7,041 (21.9)	2,420 (7.5)	1,057 (3.3)	5,330 (16.5)	11,620 (36.1)	4,713 (14.7)

나. 특별회계

- 2004년도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5,414억 9,232만원으로,
예산현액 5,568억 9,810만원의 97.2%를 지출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3건 26억 9,430만원,
사고이월 8건 28억 7,603만원 등 55억 7,03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8억 3,544만원이었음
-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전용·이체, 예비비지출, 채무부담
행위 등은 없음

7. 질의·답변 요지 : 특이사항 없음

8. 토론요지

- 2004년도 결산심사 결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경영개념이 부족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 특히, 각종 분야의 연구소 또는 연구원 설립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 완료된 기관에는 전직 공무원 출신

들이 기관장으로 부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료 출신보다는 경영마인드를 지닌 CEO출신을 영입하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기 운영되고 있는 연구원, 시험장 등에서도 소요되는 예산에 비하여 나타나는 성과가 거의 없으며, 연구분야도 이미 일반화 내지 보편화 된 분야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향후 성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임
- 앞으로 연구원, 공사, 단체 등의 설립은 사전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기 설립된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등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투자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의회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9. 종합심사 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특이사항 없음

※ 이월사업 조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집행 내역, 불용액 내역, 순세계잉여금 내역 등은 별첨 보조자료를 첨부하였음

보 조 자 료

1. 이월사업 조서
 - 일반회계
 - 특별회계
2.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일반회계)
3. 예비비 지출 내역(일반회계)
4.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 계획변경 취소 내역
 -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
5. 순세계잉여금 내역(일반회계)
6. 예산전용 내역(일반회계)
7. 채무부담행위 내역(일반회계)

1. 이월사업비 내역

가. 일반회계

○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계	69,804,238		
사이버낙동강 탐방 시스템구축 및 감리비	589,624	콘텐츠구성,원가계산,입찰공고등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이월	정보통신 담당관실
정보화마을 콘텐츠 구축	800,000	전국 시·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개발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이월	”
전자태크(RFID)를 이용한 지역특화 농산물 유통	530,000	행정자치부의 “지역경제활성화” 2차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장기간 소요되어 이월	”
복식부기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	20,000	행정자치부의 전산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	재 정 과
도청어린이집 신축 공사	443,388	도청 어린이집 신축공사로 설계등 제반절차는 이행하였으나, 동절기 공사중지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총 무 과
종합연수관 신축	1,789,844	종합연수관 신축공사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이월	자연환경 연 수 원
도립너어싱홈 신축	852,386	부지확보 및 건축설계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	보 건 위 생 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분뇨 및 축산폐수 기본계획 수립용역	40,000	환경부의 분뇨 및 축산폐수기본 계획수립 지침시달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		수질보전과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 용역	100,000	입찰공모를 실시하였으나 2차레 유찰됨에 따라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이월		수질보전과
지방어항시설	47,500	태풍 “메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방어항의 항구적 복구를 위하여 사업이 장기간 소요로 이월		해양수산과
재래시장인터넷 쇼핑물 및 홈페이지구축	114,000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연말에 교부되어 정리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이월		경 제 교 통 정 책 과
투자유치최적지 경북 이미지구축 홍보	140,328	'04.5.1 ~ '05.4.30까지 2년에 걸친 사업이므로 이월		국제통상과
동북아자치연합 경제 통합 네트워크구축	565,000	'04년도 전자정부 지원사업 공모 과제 선정사업으로 확정되었으나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 지연으로 이월		국제통상과
내연산수목원 확대 조성	1,985,700	내연산수목원 확대조성사업으로 설계 및 공기의 절대부족으로 이월		산 립 과
사방사업	867,368	사방사업으로 다목적 산림댐의 안정적 시공과 기초 지질조사등의 장기간소요로 이월		”
왕경도시립 조성	4,981,060	신라 왕경숲 재현을 위한 고증 및 설계현상 공모등 사업준비 기간의 장기간 소요로 이월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6.19 ~ 21 호우피해 복구	946,831	재해복구사업으로 나무심기, 풀씨 파종 등 '05년 춘기에 시행사업으로 이월	산 립 과
7.2 ~ 17호우피해 복구	1,457,280	”	”
태풍 “메기” 피해 복구	4,031,527	”	”
태풍 “메기” 피해 복구 (양묘시설)	56,726	태풍 “메기”로 인한 청사내 양묘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사업으로 준비기간의 장기간 소요로 이월	산 립 환 경 연 구 소
야생동물 구조센터 건립	972,100	도시계획시설이 '04. 11. 8 결정고시됨에 따라 건축설계가 늦어져 이월	산 립 자 원 종합 개발소
자생식물생태숲 조성	1,000,000	문화재지표조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등 행정적절차 이행 지연으로 이월	”
수해상습지개선 사업	9,875,531	군위군 봉황지구외 8건에 대한 사업비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하 천 과
재해 흔적조사 용역	60,000	재해흔적조사 용역사업은 사계절 변화 등의 준비자료가 요구되는 등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로 이월	”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11,450,000	가창~각남간 도로 4차선확포장외 7건에 대한 사업으로 문화재발굴, 편입용지 보상 협의지연으로 이월	도 로 과
지방도 양여금사업	2,300,000	하양~와촌~대구간 도로 4차선 확장 공사로 문화재발굴, 편입용지 보상 협의지연으로 이월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지방도 양여금 사업	1,844,933	북안~고경간 확장공사의 10건으로 문화재 지표조사, 편입용지 보상 협의지연으로 이월	종합건설 사 업 소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446,698	봉산도로의 1개지구에 대한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
백두대간 야생동물 생태통로 설치공사	848,504	실시설계 및 공사입찰 등 제반절차 이행이 상당기간 소요 이월	”
지방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424,000	지방도로 전산화사업 프로그램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	”
지방도 양여금 사업	4,785,578	지품~온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17건으로 문화재 지표조사, 편입용지 협의 보상 지연으로 이월	종합건설 북부지소
백두대간 야생동물 생태통로 설치공사	687,510	실시설계 및 공사입찰 등 제반절차 이행이 상당기간 소요 이월	”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3,578,833	당포도로의 5개지구의 위험도로 개선 사업으로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이월	”
6.19~21 호우피해 복구비(지방도)	275,571	외길마2도로의 2개지구의 수해복구 사업으로 공사가 장기간 소요 이월	”
7.12~17 호우피해 복구비(지방도)	2,483,780	신남지구외 6개지구 수해복구 사업으로 공사기간의 장기간 소요되어 이월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태풍 “메기” 피해 복구사업비(지방도)	2,537,046	산성교외 8개지구 수해복구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종합건설 북부지소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304,524	애당도로외 1건의 도로유지보수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
소방헬기 보강	3,914,000	소방헬기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이월	방 호 구 조 과
무선페이징 장비구입	136,000	무선페이징 시스템 표준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가 지연됨에 이월	”
소방헬기 응급의료 장비 구입	250,000	보건복지부 기금사업으로 소방헬기 도입시기에 맞추어 응급의료기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헬기구입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	”
소방 종합정보통신망 확충	991,068	국가종합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시행하려 했으나, 국가종합통신망 구축사업 프로그램이 지연 시달됨에 따라 이월	”
의성소방서 신축 119 보수대 설치	250,000	’05년 1월에 의성소방서가 신축됨에 따라 119보수대 설치도 이월	안 동 소 방 서
고령파출소 신축	30,000	일반파출소 규모로 이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05년 소방관서 승격계획에 따라 이월	성 주 소 방 서

○ 사고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계	55,781,768			
한방육성 타당성 조사용역	54,500	대구·경북 한방산업 육성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가 늦어짐에 따라 이월		보건위생과
특정지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92,500	건설교통부와 특정지역권 설정 협의기간이 늦어짐에 따라 이월		지역개발과
지방어항시설	4,724,622	가곡항외 3개항 시설공사로 설계 용역 및 동절기공사 중지 등으로 이월		해양수산과
해양수산물발전계획 수립	48,250	시·군 현장조사 등 이행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월		”
민물고기 환경생태 테마파크 지열냉난방 시스템 구축	901,116	공사실시 설계 등 이행기간 소요와 동절기공사 중지 등으로 이월		민물고기 연구 소
민물고기 환경생태 체험관 건립	1,727,306	테마파크조성사업과 연계추진 및 동절기공사 중지 등으로 이월		”
풍력발전기 설치공사	1,500	사업변경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사업추진 불가통보로 설계용역비만 이월		과학기술 진 흥 과
도시가스요금 산정 용역	47,000	시·군간 갈등유발요인 조정 등 보완사항을 추가로 용역하게 됨에 따라 이월		”
태풍 “매미” 피해 복구비(산림피해)	2,208,229	산림 피해복구지역내 불법건조물, 개사육장 등 보상지연으로 이월		산 립 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0,497,089	원당지구외 9개지구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편입토지 및 지상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	하 천 과
소유역홍수 예방 시스템 구축	306,998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홍수에 따른 예방시스템 업무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	”
도로 확포장 공사 예비 타당성 조사	77,000	도로공사에 따른 원가계산서, 연구용역기관 선정 등 사전심의 절차가 지연됨에 이월	도 로 과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23,581,566	안강~청령간 등 도로공사 9건으로 보상협의 지연, 문화재시굴 등 공사가 장기간 소요 이월	”
지방도 양여금사업	3,794,167	광덕교 가설공사외 3개지구 사업으로 보상협의 지연, 각종 영향평가 등으로 이월	”
태풍피해 도로 복구	1,839,620	태풍피해 도로복구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
지방양여금사업	875,628	구성~부항간 도로 확포장 공사외 9개지구로 동절기 공사중지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	종합건설 사 업 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30,530	학상도로 개선사업의 동절기 공사중지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	”
백두대간 야생동물 생태통로 개설	35,175	산지전용 합의지연 및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3,148,821	지방도 태풍피해 복구공사로 보상협의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월	종합건설 북부지소
지방양여금사업	70,571	부석~도계간 도로 확포장외 1개지구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	”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42,428	와룡도로정비사업 시행중 보상협의지연, 폐기물처리에 따른 공사지연 등으로 이월	”
경상북도 접근교통망체계분석 연구용역	27,200	고속철도 개통 및 포항~대구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국가교통망체계가 변화됨에 따라 변화요인을 반영코자 이월	경제교통 정 책 과
구조차 보강	150,000	제작업체의 부도로 타업체와 재계약후 제작함으로 이월	소방행정과
소방장비 보강	1,399,952	”	”

나. 특별회계

○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계	2,694,297		
홍수량 및 수위관측 학술용역	32,000	사계절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용역을 하기에 장기간 소요로 이월	하 천 과
하천정비기본 계획 수립	2,372,297	”	”
운동장 잔디 우레탄 설치 공사	290,000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시설사업 으로 정리추경에 예산에 반영되어 우레탄설치공사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이월	경 도 대 학

○ 사고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계	2,876,037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감리비	533,167	설계용역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이월	하 천 과
수해상습지 개선 실시설계 용역	260,000	”	하 천 과
수해상습지 개선	202,856	봉황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보상비를 연내 지급코자 하였으나 보상금 미수령으로 이월	하 천 과
수해상습지 개선 감리비	300,000	신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으로 동절기로 인한 구조물공사 추진 곤란 이월	하 천 과
대운동장 조성	400,000	부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이월	경 도 대 학
백안~와촌간 도로 확포장	1,180,014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	지역개발과

2.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일반회계)

(단위 : 천원)

장 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계		12,715,184	
일 반 행 정 비	소 계	2,390	
	• 시도행정 정보화사업	1,921	정 보 통 신 과
	•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금	237	예산담당관실
	• 여권발급 인건비	232	총 무 과
사 회 개 발 비	소 계	5,636,113	
	•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300,871	사회노인복지과
	• 저소득층 보육지원	862,528	”
	• 노인무료 및 실버시설 운영	777,801	”
	• 저소득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등	1,694,913	”
경 제 개 발 비	소 계	7,066,229	
	•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	162,090	농 산 과
	• 마늘산업 경쟁력제고 사업	121,896	유 통 특 작 과
	• 2003 연근해 감척 보상비	1,535,008	해 양 수 산 과
	• 풍력발전기 설치사업	3,100,860	과학기술진흥과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등	2,146,375	
민 방 위 비	소 계	10,452	
	• 민방위 교육훈련	3,351	민방위재난관리과
	• 소방헬기 보강사업 등	7,101	방호구조과

3. 예비비 집행 내역(일반회계)

- 예비비 총액 : 16,778,198천 원
- 집 행 : 11,820,610천 원
- 잔 액 : 4,957,588천 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집 행 액	집 행 사 유	관 련 부 서
계	11,820,610		
폭풍피해 복구비	177,230	지방어항시설 피해 복구비	해양수산과
돌풍피해 복구비	13,644	시설피해 및 조경복구비	의회사무처
설해피해 응급 복구비	200,000	농작물 등 피해 복구비	민 방 위 재난관리과
폭설피해 복구비	4,971,931	농작물, 축산, 주택, 체육시설 복구비	농산,유통특작,축산, 주택,체육청소년과
도의원 보궐선거	327,696	도의원 보궐선거 경비	자치행정과
민사소송 조정 결정금	17,401	일조권침해 손해보상금	종합건설사업소
호우피해 복구비	5,714,868	호우피해 복구비	농산,산림,새마을, 문화재,축산과
5급 일반승진시험 경비	86,771	5급 일반승진시험 경비	총 무 과
우박피해 복구비	9,930	우박피해 복구비	농 산 과
태풍 “메기” 피해 복구비	201,139	태풍 “메기” 피해 복구	농업기반,유통,축산, 해양수산,산림과
소나무 재선충 방제	100,000	소나무 재선충 피해 복구비	산 림 과

4. 집행잔액(불용액) 사유별 현황

○ 총 괄

(단위 : 천원)

사 유 별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계	34,529,308	32,181,114	2,348,194
· 계획 변경 취소	7,040,768	7,040,768	
· 집행 사유 미발생	2,419,826	2,419,826	
· 예산 절 감	1,090,400	1,056,930	33,470
· 예산 집행 잔액	6,866,154	5,330,276	1,535,878
· 보조금 집행 잔액	11,648,140	11,620,078	28,062
· 예 비 비	5,464,020	4,713,236	750,784

○ 계획변경·취소 내역(일반회계)

(단위 : 천원)

해 당 부 서	금 액	사 유
계	7,040,768	
과학기술진흥과	4,467,000	풍력발전기 설치사업으로 실시설계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산업자원부에 계획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변경불가로 사업계획 취소
새마을봉사과	2,150,000	도서종합개발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국비 미교부로 계획취소
유통특작과	250,000	우량묘목 생산지원 사업비로 시·군에 교부하려 하였으나, 시·군에서 예산 미확보 등으로 계획취소
산 립 과	160,000	야생동물 이동 통로사업으로 시·군에 교부하려 하였으나, 시·군에서 예산 미확보 등으로 계획취소
기 타	13,768	외국어경시대회 우수자 시상 계획 취소 등

○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

(단위 : 천원)

실 과, 사업소	금 액	사 유
계	2,419,826	
체육청소년과	1,200,000	청송 진보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사업공정률에 따라 자금을 지급하는데 공정율이 목표치에 미달되어 미집행
정 보 통 신 담 당 관 실	846,000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사업으로 23개시·군에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통신환경을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중앙관계 부처간 협의가 되지 않아 미집행
도 로 과	251,673	보상단가 불만에 보상협의 지연 및 등기 등의 제반 절차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집행
방 호 구 조 과	47,723	의용소방대원이 소방활동을 보조하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
의 회 사 무 처	21,600	외빈초청 여비 및 의원상해 부담금 등으로 계상하였으나, 계획 및 사정변경 등으로 미집행
과학기술진흥과	20,861	농어촌 전화사업비로 산업자원부에서 도를 경유하여 시·군에 교부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에서 직접 교부함으로써 미집행
기 타	31,969	농산물 유통전문인력원의 해외파견 이전경비 미집행 등

5. 순세계잉여금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세 입 (A)	세 출 (B)	이 월 액 (C)	순세계 잉여금	비 고
계		34,304	30,541	1,437	2,326	
일 반 회 계		26,925	25,126	1,381	418	
특 별 회 계		7,379	5,415	56	19,08	
	의 료 급 여	2,059	20,58		1	
	치 수 사 업	409	372	37		
	경 도 대 학	82	68	7	7	
	광역교통시설	73	57	12	4	
	지역개발기금	4,756	2,860		1,896	

6. 예산전용 내역(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업명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일자	사유
	세항	세세항	목		감액	증액		
계					139,570	139,570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	1224 자치행정 관리	120 경상적 경비	201-01 일반 운영비	583,040	20,000		04.10.21	공무원교육훈련 평정제도 및 직무와 관련된 교육수요 증가로 인하여 교육여비 부족으로 전용
	1224 자치행정 관리	120 경상적 경비	202-01 여비	502,340		20,000	04.10.21	
제1회 지역혁신 박람회 개최	3211 경제진흥 사업	220 자 채 사업	207-10 연구 개발비	100,000	100,000		04.10.26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 개최 참가에 따른 전시관 설치 부족으로 전용
	3211 경제진흥 사업	220 자 채 사업	307-04 민간 이전			100,000	04.10.26	
일선 소방서 의무소방원 인건비	4211 소방행정 보조 사업	210 인건비	201-01 일반 운영비	890,343	1,570		04.12.16	일선 소방서 의무소방원의 연도중 계급상승에 따른 부족으로 전용
	4211 소방행정 인건비	110 인건비	101-03 기타직 보수	109,451		1,570	04.12.16	
국경일 행사 등 참석자 여비 보상	1241 총무관리 경비	120 경상적 경비	201-01 일반 운영비	401,560	18,000		04.12.31	참석자 여비보상 부족으로 전용
	1241 총무관리 경비	120 경상적 경비	301-09 일반 보상금	51,000		18,000	04.12.31	

7. 채무부담행위 내역(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과 목		사 업 명	승인일자	채무부담	채무부담	상환조건	채무부담
세 항	목			행 위 승 인 액	행 위 액		
계				22,542	22,542		
지방도사업	401-01 시 설 비	국 가 지 원 지방도사업	03.12.16	3,000	3,000	2005년도 일시상환	도비부담 재원부족
		지방도사업 (도시행분)	03.12.16	6,900	6,900	"	"
	403-02 공기관등에대 한 대행사업비	지방도사업 (시군시행분)	03.12.16	700	700	"	"
종합건설 사업소운영	401-01 시 설 비	지방도사업	03.12.16	4,500	4,500	"	"
종합건설 사업소북부 지소운영	401-01 시 설 비	지방도사업	03.12.16	1,900	1,900	"	"
영선관리	401-01 시 설 비	도청어린이 집 신축	04. 6.10	745	745	"	"
보건위생 사업	401-01 시 설 비	도립녀어싱 홈신축	04. 6.10	700	700	"	"
민물고기 연구사업	401-01 시 설 비	민물고기 환경생태 체험관신축	04. 6.10	497	497	"	"
치수방재 사업	401-01 시 설 비	수해상습지 개선	04. 6.10	1,000	1,000	"	"
방호구조 사업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방헬기 보강	04. 6.10	2,600	2,600	"	"

200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종합심사 보고서

1. 소관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6월 23일, 경상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5년 7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0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년 7월 7일 : 상정·질의·토론·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정호식)

가.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25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200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200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결산

•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4.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1) 세입·세출 결산현황

가. 총괄

□ 200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은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831억 3천만원을 포함하여 2조 1,911억 7천 9백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2조 1,322억 6천 5백만원으로서
 - 의존수입이 전체 89.0%인 1조 8,969억 4천 1백만원
 - 자체수입이 전체 11.0%인 2,353억 2천 4백만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세출결산액은 2조 114억 1천 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 지출되었음.

-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비고
2,191,179	2,132,265	2,011,414	120,851	○ 순세계잉여금 : 7,515 ○ 이월금 : 113,336 · 명시이월 - 60,056 · 사고이월 - 53,280

나. 세 입

□ 예산현액은 2조 1,911억 7천 9백만원으로서

징수 결정액은 2조 1,486억원이며, 이중 2조 1,322억 6천 4백만원은 수납(97.31%)되었고, 7천 8백만원은 불납 결손 되었으며, 162억 5천 8백만원은 미수납 되었음.

⇒ 불납 결손액 7천 8백만원은

- 입학금 및 수업료 1천 8백만원
 - 잡수입 6천만원
-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학생의 자·퇴학에 의한 것이며
잡수입은 채무자 사망, 행정소송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 미수납액 162억 5천 8백만원은

- 비법정전입금 3억 1천만원
- 재산수입 7천 2백만원
- 입학금 및 수업료 1천 2백만원
- 잡수입 3천 4백만원
- 지방교육채 158억 3천만원

비법정전입금은 시설설치비로서 시설 완공 시 영주시 로부터
입금 예정이며, 재산수입은 금년도 상반기내에 수납예정이고,
지방교육채는 학교부지매입비로서 보상협약이 원만치 않아 교육
재정의 건전성을 감안하여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해 채권 미발행
으로, 미수납된 것으로 판단됨.

- 세입 결산 내역 -

(단위:백만원)

구분	관 별	예산현액 ①	정 결 수 정 액 ②	수 납 액 ③	불 납 결 손 ④	미 수납액 ⑤	수납율 ③/②
	계	2,191,179	2,148,600	2,132,264	78	16,257	99.2
의 존 수 입	소 계	1,942,028	1,897,250	1,896,940		310	99.9
	지 방 교 육 재정 교부금	1,524,301	1,536,129	1,536,129	-	-	100
	지 방 교 육 양 여 금	242,271	184,168	184,168	-	-	100
	국고지원금	11,779	11,679	11,679	-	-	100
	법정전입금	157,711	159,211	159,211	-	-	100
	비 법 정 전 입 금	2,581	2,581	2,271	-	310	87.9
	주민(기관등) 부 담 금	1,552	1,649	1,649	-	-	100
	기타 지원금	1,833	1,833	1,833	-	-	100
자 체 수 입	소 계	249,151	251,350	235,324	78	15,947	93.6
	재 산 수 입	14,502	17,569	17,497	-	71	99.5
	입 학 금및 수 업 료	27,374	27,398	27,368	18	12	99.8
	사 용 료및 수 수 료	139	196	196	-	-	100
	잡 수 입	7,236	7,228	7,134	60	34	98.6
	이 월 금	183,129	183,129	183,129	-	-	100.0
	지방교육채	16,771	15,830			15,830	0.0

□ 세입결산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의존수입은 1조 8,969억 4천만원이며 세입 결산액 대비 89.0%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5,361억 2천 9백만원
○ 지방교육양여금	1,841억 6천 8백만원
○ 국고지원금	116억 7천 9백만원
○ 법정전입금	1,592억 1천 1백만원
○ 비법정전입금	22억 7천 1백만원
○ 주민부담수입 등	34억 8천 2백만원

자체수입은 2,353억 2천 1백만원이며 세입 결산액 대비 11.0%임

○ 재산수입	174억 9천 7백만원
○ 입학금 및 수업료	273억 6천 7백만원
○ 사용료 및 수수료	1억 9천 5백만원
○ 잡수입	71억 3천 4백만원
○ 이월금	1,831억 2천 8백만원

- 세입예산 재원별 내역 -

(단위:백만원)

의존수입					
소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방교육 양여금	국고지원금	전입금	주민부담수입등
1,896,940	1,536,129	184,168	11,679	161,482	3,482

(단위:백만원)

자체수입					
소계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이월금
235,324	17,497	27,368	196	7,134	183,129

다. 세 출

□ 예산현액은 2조 1,911억 7천 9백만원으로서

예산액 2조 526억 1천 7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385억 6천 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이중 2조 114억 1천 4백만원은 지출(91%)하였고,
1,133억 3천 6백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5.2%)하였으며,
664억 2천 9백만원은 불용(3.03%)처리 하였음

⇒ 불용액을 성질별로 보면

○ 인 건 비	107억 1천 6백만원
○ 물 건 비	27억 6천 9백만원
○ 경 상 이 전	78억 1천 5백만원
○ 자본지출경비	392억 9백만원
○ 예비비 및 기타	59억 2천만원

⇒ 불용액을 발생 원인별로 보면

○ 계획변경 및 취소	16억 7백만원
○ 예 산 절 감	6억 5천 9백만원
○ 지급사유 미발생	388억 6천 7백만원
○ 집 행 잔 액	252억 9천 6백만원임

- 세출 결산 내역 -

(단위:백만원)

관 별	예산액 ①	예 산 결정후 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 월 액 ⑤	불용액 ⑥=③- ④-⑤	불용 율 ⑥/③
합 계	2,052,617	138,562	2,191,179	2,011,414	113,336	66,429	3.03
유 치 원	16,209	1,053	17,262	15,638	1,553	71	0.41
초등학교	246,410	61,565	307,976	253,756	41,781	12,439	4.03
중 학 교	218,347	29,990	248,337	195,888	30,247	22,202	8.94
고등학교	285,424	43,210	328,634	292,943	26,993	8,698	2.65
특수학교	20,657	0	20,657	17,649	2,732	276	1.34
평생교육	8,505	930	9,435	7,684	1,012	739	7.83
급여관리	1,052,114	-	1,052,114	1,041,280	-	10,834	1.03
복지후생	102,757	-	102,757	100,179	-	2,578	2.51
교육위원회	627	-	627	598	-	29	4.63
교 육 청	30,877	134	31,012	24,830	5,166	1,016	3.28
지역교육청	17,472	1,630	19,102	17,913	446	743	3.89
교육지원기관	15,832	49	15,881	11,593	3,406	882	5.55
지방채상환	31,465	-	31,465	31,463	-	2	0.00
제지출금	9	-	-	-	-	-	-
예 비 비	5,920		5,920	-	-	5,920	100

- 불용액 내역 -

(단위:백만원)

성질별	예산액	불용액	원 인 별 내 역					불용율	
			계변취	획경및소	정원및호봉미달영	예산절감	지급유발생		집행잔액
계	2,191,179	66,429	1,607			659	38,867	25,296	3.03
인건비	1. 1,039,298	10,716	-		-	-	87	10,629	1.03
물건비	72,886	2,769	112		-	571	163	1,923	3.80
경상이전	713,143	7,815	496		-	1	1,044	6,274	1.10
자본지출 경비	333,441	39,209	999		-	87	31,653	6,470	11.76
예비비 및기타	5,920	5,920			-	-	5,920	-	100.0
보전지출	26,251	-	-		-	-	-	-	-
내부거래	240	-	-		-	-	-	-	-

라. 예 비 비

○ 2004 회계연도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 예산 전용

당해연도 전용액은 6억 5천만원으로 교원과 일반직 급여에서 민간경상이전 보상금으로 전용된 것임.

- 예산 전용 내역 -

(단위:백만원)

사업명	구분	과 목				예산액	전용액		전용일자	사 유
		관	항	세항	목		증	감		
교원 급여	전용 (증)	복지 후생	부담금 및 후생	교원 급여	민간 경이 상전	1,510	500		2004 12.28	연금부담금 및재해보조금 부족분지급
	전용 (감)	복지 후생	부담금 및 후생	교원 급여	보상금	81,894		500		
일반직 급여	전용 (증)	복지 후생	부담금 및 후생	행정직 급여	민간 경이 상전	350	150		2004 12.28	연금부담금 및재해보조금 부족분지급
	전용 (감)	복지 후생	부담금 및 후생	행정직 급여	보상금	17,160		150		
계	전용 (증)					1,860	650			
	전용 (감)					99,054		650		

바. 계 속 비 : 해당없음

사. 이 월 비

이월액은 예산현액 2조 1,911억 7천 9백만원 중
1,133억 3천 6백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5.2%임

- 명시이월 135건, 600억 5천 6백만원
- 사고이월 126건, 532억 7천 9백만원

- 이월액 현황 -

(단위:백만원)

예산현액	이 월 액				비 율 (%)
	계	계 속 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2,191,179	113,336	-	60,056	53,280	5.2

2) 세입·세출 외 결산 현황

가. 채권 및 채무의 결산

(1) 채 권

- 전년도말 채권액 832억 4백만원보다 39억 8천 1백만원이 증액된 871억 8천 5백만원으로서
- 국고 대여장학금 37억 1백만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3억 1천만원, 수업료 8백만원, 잡수입 1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 재산임대료 3천 9백만원 감액되었음.

- 채권 결산 현황 -

(단위:백만원)

종 류 별	전년도말	연도중 증감액		당 해 연 도 말	비 고
		증	감		
계	83,204	14,261	10,280	87,185	
원어민영어교사 주택 전세권	81	-	-	81	
전교조경북지부 사무실 전세권	80			80	
국고대여장학금	82,896	13,865	10,164	86,597	
기초자치단체전입금		310		310	
재산 임대료	141	72	111	102	
수 업 료	4	12	4	12	
잡 수 입	2	2	1	3	

(2) 채 무

전년도말 채무액 1,578억 2천 9백만원보다 262억 5천 1백만원이
감액된 1,315억 7천 8백만원으로서 차입금 잔고 내역은

- 교원명예퇴직수당 ('99~2000) 938억 1천 8백만원
- 학교시설비 (2000) 104억 3천 2백만원
- 소규모학교통폐합지원비 (2000) 273억 2천 8백만원임.

- 채무 결산 현황 -

(단위:백만원)

종류별	전년도말	당 해 연 도 중 증 감 액			당 년 도 말	기한도래 미 지 급 이 자	비 고
		계	채 무 발생액	상환· 소멸액			
차입금	157,829	△26,251	-	26,251	131,578	-	

나. 재 산

(1) 공유 재산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보다 1,660억 1백만원이 증가된
3조 183억 6천 5백만원임.

- 행정재산은 전년도말 보다 1,609억 6백만원이 증가된
2조 9,589억 3천 4백만원이며
- 잡종재산은 전년도말 보다 50억 9천 5백만원이 증가된
594억 3천 1백만원임.

- 공유재산 현황 -

(단위:백만원)

용 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중 증 ·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증	감	
계	2,852,364	166,001	244,186	78,185	3,018,365
행정재산	2,798,028	160,916	211,623	50,707	2,958,934
잡종재산	54,336	5,095	32,563	27,468	59,431

(2) 물 품

○ 물품은 전년도말 보다 165억 4천 9백만원이 증가된

1,843억 3천 9백만원으로서 전기·기계 등 10종, 38,338점에 대한
물품 현재액임.

- 물 품 현 황 -

(단위:수량/점, 백만원)

품 종 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 해 연 도 현 재 액	
			증		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전기기계 등 10 종	34,175	167,790	5,626	26,193	1,463	9,644	38,338	184,339

5. 전문위원(주근호) 검토의견

1) 총괄 부문

□ 2004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385억 6천 2백만원을 포함한 2조 1,911억 7천 9백만원으로

세입결산은 2조 1,486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1,322억 6천 5백만원을 수납(99.9%)하였으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163억 3천 4백만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조 1,911억 7천 9백만원의 92%인
2조 114억 1천 3백만원임

- 따라서 세입 및 세출결산액의 차액은 1,208억 5천 2백만원으로
이월금 1,133억 3천 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75억 1천 5백만원임

2) 세입 부문

□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지방교육 양여금, 국고지원금, 전입금 등
으로 구성되는 의존수입이 전체예산의 89.0%,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재산 수입과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이월금 등 자체수입은 11.0%임

- 이중 지방교육양여금은 예산현액 2,422억 7천 1백만원 중 1,841억 6천 8백만원만 교부되고 나머지 581억 3백만원은 연도 내 교부받지 못하였음.
- 자체수입 중 이월금은 사실상 2003년도에 국비로 지원된 예산이 2004년도로 이월된(순세계잉여금, 명시·사고이월) 것으로서 순수한 자체수입은 3%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지방 교육재정임을 감안할 때
-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방교육양여금 581억원이 미교부 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5년간 연평균 406억원의 18.5%인 75억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으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 년도별 세입추이 -

(단위:백만원)

구분 년도별	합 계	의 존 수 입		자 체 수 입	
			%		%
2002	1,932,176	1,658,664	85.8	273,512	14.2
2003	2,121,262	1,882,004	88.7	239,258	11.3
2004	2,132,264	1,896,940	88.9	235,324	11.0

- 또한, 미수납액은 전년도 0.01%보다 대폭 증가한 0.76%인 163억원으로서 재정운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적극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신설학교 부지매입을 위해 158억원의 교육채 발행을 계획하고도 발행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매년 부동산 가격이 시중금리 이상으로 상승하는 점을 고려할 경우 사전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학교신축과 운영에도 유리할 것으로 사료됨.

-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 발생현황 -

(단위:백만원)

구분 년도별	불 납 결 손 액					미 수 납 액				
	계	무재산	거 소 불 명	시 효 완 성	기 타	계	거 소 불 명	재 부 력 족	재 산 류 중	기 타
2002	49	4	2	3	40	153	3	78	17	55
2003	34	-	-	1	33	147	1	77	3	66
2004	77	-	-	2	75	16,257	8	106	-	16,143

3) 세출부문

□ 먼저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 2조 1,911억 7천 9백만원의 91.8%를 지출하였고

미지출액은 1,797억 6천 6백만원으로 2004년도 이월액

1,133억 3천 6백만원(이월율 5.2%), 불용액 664억 2천 9백만원임

(불용율 3.03%)

□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 2004년도 이월액은 1,133억 3천 6백만으로(예산현액의 5.2%)

• 명시이월 : 135건 600억 5천 6백만원(2.8%)

• 사고이월 : 126건 532억 7천 9백만원(2.4%)임

○ 이월액은 주로 교육사업비, 학교운영비, 시설비 등 사업비적 성격의 예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제40조에서는 예산의 신축적 운용을 위하여 세출예산 이월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매년 과다한 이월금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당해연도 교육수혜자에게 잠재적인 손실을 끼쳤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은 단위사업의 성격,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계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월비 발생현황 -

(단위:백만원)

구분 년도별	예산현액	이 월 비			이월율 (%)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2002	1,931,516	152,280	47,398	104,882	7.9
2003	2,121,263	138,562	75,385	63,177	6.5
2004	2,191,179	113,336	60,056	53,280	5.2

□ 불용액에 대하여

-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은 664억 2천 9백만원으로서 불용액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16억 7백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388억 6천 7백만원, 집행잔액 252억 9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520억 2천 9백만원에 비해 많이 증가되었음
- 특히, 급여·복지 예산중 인건비는 교육재정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전에 충분한 예측으로 소요액 추계에 정확을 기하여야 하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함으로써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 인건비 잔액 107억원에 대하여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등이 초과 지출 될 소지가 있는바 연말 정리추경 편성시 적정을 기하여 과다지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 2003년도 이월사업비 중 사고이월사업비 632억원 중 불용액이 6억 6백만원 발생한 것은 지출원인 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사업비가 이월 후 계획이 변경되거나 축소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사업의 추진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불용액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예산은 추진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타 사업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사업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불용액 발생현황 -

(단위:백만원)

구분 년도별	예산현액	불 용 액	원 인 별 내 역					불용율 (%)
			계획변경 및 취 소	정원 및 호봉미달 영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 발 생	집행잔액	
2002	1,931,516	32,727	2,844	2	927	13,630	15,324	1.7
2003	2,121,263	52,007	2,428	-	-	26,101	23,478	2.5
2004	2,191,179	66,429	1,607	-	659	38,867	25,296	3.03

6. 질의 및 답변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특이사항 없음

【동의안 : 1건】

- 2007년도 개교예정학교 신설비 민간투자유치 계획안

2007년도 개교예정학교 신설비 민간투자유치계획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5. 7.

제 출 자 : 경상북도교육감

I. 제출근거

교육인적자원부의 「초·중등학교 및 체육관 신설 민간투자 유치계획」에 의거 2007년도 개교예정학교 신설을 위한 민간투자유치계획(안)을 제출합니다.

II. 민간투자 유치 사유

부동자금화하고 있는 금융자금 및 저수익의 연기금에 대한 투자처 제공으로 경제의 확대 재생산을 도모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범정부적 종합투자계획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초·중등학교(체육관 포함) 신설 및 노후교사 증·개축사업을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경상북도교육청의 2007년도 개교 예정인 4개 학교를 2005년도에 추진할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 BTL방식(Build-Transfer-Lease, 임대방식)으로 학교신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III. 민간투자 유치계획(안) : 붙임

2007년도 개교예정학교 신설비 민간투자유치계획(안)

I. 민간투자 유치의 필요성

- 부동산금융화하고 있는 금융자금 및 저수익의 연기금에 대한 투자처 제공으로 경제의 확대 재생산을 도모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여건으로는 계속 늘어나는 학교(체육관 포함) 신설비 및 노후교사 증·개축비 등 교육시설사업비 충당에 한계가 있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시설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교신설 및 노후교사 증·개축에 필요한 사업비 적기 확보 필요

II. 법적근거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2005. 1. 27 민투법 개정 시 민간투자대상사업에 ‘학교시설’이 포함됨

III. 민간투자 유치계획

- ☐ 사업명 : 2007년도 개교예정학교 신축공사
- ☐ 사업방식 : 민투법 제4조 제2호에 의한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 사업물량 : 봉곡초등학교 등 4교 39,906㎡
- ☐ 사업추진 : 2005년도
- ☐ 채무부담행위액 : 70,620백만원 (투자수익율 6% 반영)
- ☐ 상환계획 : 소유권이전 후 20년간 매년 원리금 3,531백만원 균분 상환
- ☐ 상환부담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연도별 상환액 지원

※ 2005년도 집행 BTL사업 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사업명	시설규모 (㎡)	시설비	채무부담 행위액	상환계획	비고
				2007년~2026년	
봉곡초등학교 등 4교 신축	39,906	40,504	70,620	연 3,531	

IV. 사업추진 기본계획 : 붙임

민간투자유치 학교시설사업 추진계획

◎ 사업 추진 개요 및 배경

□ 범정부적 종합투자계획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추진(저수익 금융자금, 연기금 투자처 제공, 일자리 창출)

□ 2005.01.27.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

개정사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상시설 범위와 추진방식을 다양화하여 기관 및 개인투자자가 쉽게 간접투자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주요내용

1) 대상시설의 범위 확대 : 기존 35개 시설에서 10개 추가되어 45개 대상 시설로 범위 확대됨으로 학교시설도 추가되었음

2) 민간투자사업 시행방식 추가 : 기존 B(건설)T(이전)O(운영) 방식에서 B(건설) T(이전)L(임대) 방식 추가되었음

3) 교육·복지·문화 시설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로 이런 분야에 대한 시설의 조기 확충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이 기대됨

□ 범정부 종합투자계획 추진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상북도교육청 민자유치 대상사업 제출 현황

△ 추진 목표

1) 신설학교 : ① 택지개발지역·신도시지역 학교 적기완공 개교

② 대도시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완화

2) 노후 증·개축 : ① 40년 이상 경과된 구조적 불안전 시설 완전 개축. ② 30년 이상 경과 건물 중 기능상 부적합건물 증·개축

3) 체육관 신·증축 : ① 체육관 보유율 개선(40%)

② 6학급이상 100명 이상 학교 중 미보유 학교

△ 추진 현황

(단위:백만원)

계획년도	사업명	물량	추정금액	비고
2005년 집행 대상사업	초,중등 학교신설	4교	40,504	봉곡초,삼주초,환호초,금장중
	합 계		40,504	

◎ 2005년 집행 대상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 건설기간, 예정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학교명(가칭)	사업명	시설규모		추정투자금액 (단위:백만원)	건설 기간	예 정 지 역
		학급수	추정연면적 (㎡)			
봉곡초(신설)	봉곡초 등	30	9,487	9,629	16개월	경북 구미시 봉곡동 190번지
환호초(신설)	4개교	30	9,487	9,629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 442번지 일원
삼주초(신설)	신축공사	42	12,701	12,892		경북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 산1-2번지
금장중(신설)	(BTL)	24	8,231	8,354		경북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341-1번지
합계		126	39,906	40,504		

□ 사용료(임대료), 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 추진 방식 및 관리운영 등 기타에 관한 사항

학교명 (가칭)	사업명	사업시행자 수익에 관한 사항 ※ 기본가정(유지관리비는 추후 별도 산정) 1 임대(상환)기간 : 20년 2 수익률 : 6%(국공채금리 4.5%+유동성프리미엄1.5%) 3.임대료지급방식 : 매년 균등 상환 4 임대료산출 : 경상가 산출 5.부대사업 : 계획없음 6.위 기본가정은 지침변경 시 조정될 수 있으며 추 정금액임		추진방식	재정지원 규모 및 방식	관리 및 운영에 관한사항	사업시행자 의자격요건 기타
		연간시설 사용료(임대) (기간:2007~2026)	총시설사용료 (총임대료)				
봉곡초 (신설) 환호초 (신설) 삼주초 (신설) 금장중 (신설)	봉곡초 등 4개교 신축공사 (BTL)	35억3천1백만원	706억2천만원	◇BTL(Build-Transfer- -Lease)방식 △민간사업자가 주로 자금투자로 건설하여 교육청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민간투자비는 교육청에 임대하여 장기 분할하여 회수	매년도 상환에 필요한 원리금 을 교육인적자 원부로부터 지 방 교육 재정 교 부금으로 지원 (별도)받아 상 환	시설사업계 획고시할 때 임대기간동 안 유지관리 ,보수까지 포함 계약할 예정임	사업시행 요 건 및 절차 에 관하여 협의 중
		※ 불임 시설임대료 산정 모델 참조(기획예산처 제공)					

【기타안 : 3건】

- 2004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보고
-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상황 보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04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보고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 위원 박종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 4월 26일 제198회 경상북도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7대 도의원 중 권종연 의원님과 김석호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을 2004회계연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수고해 주신 재무관련 전직 공무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여섯분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결산검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검사위원 및 검사기간, 검사대상 기관, 검사방법 세입·세출 결산개요, 그리고 시정 및 개선할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중요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해 관계법령 등 제반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도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낭비됨이 없이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가를 검사함으로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기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및 감사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은 9인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2인과 재무관련 전직공무원 2인, 공인 회계사 2인 그리고 세무사 2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당초에 2005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이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하여 10일간을 연장하여 6월 18일까지 총 3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대상기관은 경상북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38개 기관과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및 산하 23개 기관입니다.

결산검사 실시방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가 정한 검사 사항을 범위로 하여 세입·세출의 제 장부열람, 증빙자료대조,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등의 서류검사와 12개 기관 및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제7대 도의회 마무리 연도인 2006년도 당초예산 심사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등 감사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조 9,337억 9천 1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조 9,547억 4천 7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7,681억 6백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1,798억 7천만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조 1,911억 7천 9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조 1,322억 6천 5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114억 1천 4백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1,208억 5천 2백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세입·세출, 이월액, 불용액 내역과 예비비, 채권·채무, 재산 및 금고의 결산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총12건으로 경상북도 소관이 7건이고 경상북도 교육청이 5건 입니다.

먼저 경상북도부터 주요 시정·개선사례를 말씀드리면

각종 기금운용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17개 기금 수입액이 3,861억원으로 이중 이자 수입액은 151억원으로 3.9%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시중 6개 은행에 정기 및 보통예금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으나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따라 그 수입은 더욱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익성 증대를 위한 기금의 다양한 운용 대책 및 유사 기금의 통폐합으로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풍력발전시설의 비효율적 운영입니다. 정부의 대체 에너지 개발사업에 부응하고 풍력발전기의 관광자원화를 목적으로 시설비 28억원으로 설치된 포항·울릉 풍력발전기가 포항은 작년 8월부터, 울릉은 2000년 3월에 20일간 가동 후 지금까지 기술력 부족으로 중단된 상태로 있으며, 한편 신규사업으로 포항지역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하여 2003년부터 총사업비 45억원을 확보하여 설계비 33백만원을 지출 한 후 사업을 포기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 풍력발전기의 사업성과 계속 가동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신규사업을 수립할 경우 사업효과와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공사 추진이 미흡합니다. 지난 해 6월 집중호우와 8월 태풍 “매기”로 인한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국비보조금을 교부하여 추가경정 예산성립전에 조치하였으나, 산림재해복구, 도로복구사업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12월 이후에 공사를 착공하여 다음 해 6월까지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등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재해복구는 예산이 확보되면 지역민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응급 복구함과 아울러 피해가 확대·재발생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항구 복구 계획을 수립 추진하되 동절기 전에 완료하여 다음연도 이월공사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의 경우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부담금을 시·군 재정 여건상 어려움으로 공사가 지연·방치되고 있어 이를 조기완공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개인용 PC의 관리 미흡의 건은 특단의 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일조건 등 피해보상 미흡의 건은 공사 시행청, 설계자, 시공자의 책임한계 규명과 피해 보상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5 울진세계친환경 농업엑스포 교통대책은 광역단위의 교통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소관입니다.

불용예산 임의 전용 부적정 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8조에 의거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교육청의 경우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시급하다고 하여 임의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각 단위사업의 적정규모, 집행시기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사업을 조기에 집행하여 잔액에 대한 사용계획을 추경예산에 반영·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권액 관리가 소홀하였습니다. 구미교육청 외 3개 기관의 “원어민 영어교사의 주택전세권”은 이미 채권 만기일이 경과, 경매·반환소송으로 일부를 회수하고 8천 1백만원의 임대인의 재산이 없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미회수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 회수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며, 앞으로 부실 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특수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부서가 기획예산과 등 8개 부서에 산재되어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비효율적이므로 부서를 단일화 할 필요가 있으며 폐교재산에 대한 대부계약금 등 9천 7백만원의 체납이 발생하는 등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마지막으로, 2003년도 이월된 사업비를 2004년도에 전액 불용처리 하는 등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결산검사 결과, 예산집행은 비교적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개선하여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조치 함과 아울러 내년도 정책수립과 예산편성시에 적극반영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결산 심사시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정수요는 300만 도민의 기대욕구에 부응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 지방재정여건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극복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일상적인 경상경비는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은 억제하는 한편, 사업계획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합리적인 예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잘못된 관행이나 비효율적인 예산낭비 요인을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재정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열악한 지방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원 발굴 등에도 부단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가 지방재정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상황 보고

1. 공공기관 이전 추진배경

□ 지난 40년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날로 심화되어,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필요

-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국인구의 47.6%, 전체 공공기관의 85%, 100대 기업 본사 91% 집중

※ 수도권 집중도 변화 추이

인구 28%('70) → 47.6%('02), GRDP 45.6%('90) → 47.8%('01),
금융대출 62.9%('90) → 64.7%('01)

- 이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비용 급증으로 국가 경쟁력이 저하

※ 교통혼잡 12조 4천억원, 대기오염 10조 4천억원,
환경처리 4조 2천억원(연간)

□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지방분산이 필수적

- 이를 통해 수도권은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 경제의 질적 혁신을 통해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발전 가능
- 지방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성장 동력 확보

※ 지역혁신체계(RIS)구축, 지역전략산업 육성, 혁신클러스터 형성, 지방 대학 육성 등의 촉매작용

2. 그동안 우리 道의 유치활동

□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이전효과가 큰 기관을 다수 유치하기 위하여 지역의 역량을 결집, 유치활동 전개

○ 주요 활동 사항

- '03.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정부혁신위원장 방문 협조 요청
- '04. 11월 국무총리 주재 공공기관이전 관련 『정책설명회』에서 공공기관유치 건의
- '04. 12월 대통령께 공공기관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건의
- '05. 3월 청와대 방문 지역여건 설명 및 도로공사 등 유치 건의
- '05. 5월 공공기관 이전관련 기본협약 체결
- '05. 6월 청와대 관계관 방문 공공기관유치 협조 요청
공공기관 이전관련 시도지사 간담회(6.30)

○ 실·국별 유치대상 기관을 배분, 도로공사 등 이전대상기관 방문 등 유치활동 전개

□ 지역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구시와 공동노력

- 경북·대구지역의 각계 대표, 전문가 등으로 □□대구경북공공기관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유치 활동
-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내에 『공공기관이전전략기획팀』을 구성하여 공공기관 유치논리 개발

□ 특히, 도 의회에서 '05. 6. 9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유치활동 지원

3. 우리 道로의 공공기관 배치 결과

□ 배치 기관 현황

구분	기 관 명	소재지	본사인원 (명)	'04년 지방세 납부(억)	예 산 (억원)	주요기능
합계	13개 기관		3,559	106.2	71,418	
도로	한국도로공사	성남	688	80	61,430	고속도로 건설 및 관리
교통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서울	130	1.2	553	건설부문 종합 감리
(3)	교통안전공단	안산	200	2	2,582	사고예방 홍보 자동차 성능시험연구
농업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양	95		203	농산물 안정성 조사, 품질관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안양	246		407	수출입 동축산물 검역 및 수의연구
	국립식물검역소	안양	73		273	수출입 식물 검역
	국립종자관리소	안양	64		170	식물종자보급, 신품종 특허 인증
기타 기관	한국전력기술(주)	용인	1,793	23	3,714	원전 및 발전소 설계
	기상통신소	서울	9		8	연근해상 기상방송
	조달청중앙보급창	용인	88		190	조달청 사무용품 공공기관 보급
	정통부 조달사무소	서울	100		1,523	우체국 건설 및 우표 보급
	한국갱생보호공단	서울	20		75	출소자 사회 적응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53		290	무료법률상담 민·형사 행정소송대리

□ 기대효과

-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의 고용 및 지방세수 증가, 협력기관과 민간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
- 도로공사의 유치에 따라 향후 지역 건설 산업의 발전은 물론 동서5축 및 6축 고속도로 건설 등을 앞당겨 지역발전 촉진
- 농업지원 기능군의 이전은 전통적 농도인 우리 도를 미래 첨단 과학 기술 농업 선진지역으로 발전 기대
- 한국전력기술(주)의 이전은 전국 최대 전력생산지역으로서의 생산 기반을 구축한 우리 도에 설계 및 연구기능을 더하여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기여 전망

4. 향후 추진 일정

□ 정부의 공공기관 입지선정 지침시달 : '05. 7월말 까지

□ 공공기관 입지 선정 : '05. 9월말 까지

- 공공기관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추후 시달될 정부방침과 도의 입지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구성
- 입지선정 원칙과 기준
 - ① 효율성 : 지역발전과 이전기관의 기능적 특성 연계
 - ② 지역 연고성 및 입지여건 : 기 구축된 산업인프라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연고성 및 공공기관 입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고려
 - ③ 형평성 : 광역적 관점에서 지역발전정도 감안

④ 이전기관의 선호도 : 이전되는 기관의 입지 선호도 배려

⑤ 지역의 발전 전략 : 공공기관 입지 후 발전전략 고려

○ 입지 방식

- 입지선정 기준 및 방식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7월말까지 확정하여 시도에 선정지침을 통보예정(현재 용역 중)
- 시도별 혁신도시 한 개를 건설하여 집단 이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 이전 이행협약 체결 : '05. 9월말 까지

- 주무부처 · 공공기관 · 도간 구속력 있는 협약 체결
- 협약의 내용은 이전규모, 이전시기, 이전지역, 이전지원사항 등의 사항을 확약

□ 공공기관 이전 완료 : '06년~2012년

- '06년부터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용지보상, 도시 기반 시설 구축, 사옥설계 · 건축 및 이전으로 2012년까지 완료예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05. 7. 1 ~ 2006. 6.30)

□ 선임 현황

구 분	선 임 의 원 명 단	비 고
계	15명	
의장추천	김병진 의원 (문경 1), 김순견 의원 (포항 3), 박승학 의원 (청송 2)	
기획과학위원회	양재경 의원 (청도 2), 정무웅 의원 (울릉 2)	
행정사회위원회	이상태 의원 (울릉 1), 황상조 의원 (경산 2)	
교육환경위원회	김선중 의원 (안동 2), 이 달 의원 (경주 2)	
농정위원회	강영서 의원 (봉화 2), 김주연 의원 (칠곡 2)	
경제과학위원회	김정기 의원 (김천 1), 최원병 의원 (경주 3)	
건설소방위원회	이종철 의원 (영천 2), 장 욱 의원 (군위 2)	

의정활동보고서(제200회 정례회)

2005. 7 인쇄 / 2005. 7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39

FAX : 955-9185

〈비매품〉